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2018. 9

이경희

머 리 말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가입자의 특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보다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퇴직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3층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퇴직연금제도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디폴트 투자옵션과 디폴트 보장옵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적립단계 중심에서 점차 인출단계로 성숙되어감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출상품의 요건에 대한 논의 내용도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9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1

II.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 14

1.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 / 14

2. 퇴직연금제도 / 19

III. 디폴트 정책 및 효과 / 33

1. 디폴트 투자 / 33

2. 디폴트 보험 / 46

3. 인출상품 / 55

IV. 시사점 및 맺음말 / 64

1. 정책 목표 / 64

2. 디폴트 옵션 설계 / 66

3. 맺음말 / 70

| 참고문헌 | / 73

| 부록 | / 76

■ 표 차례

- 〈표 I-1〉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2017) / 11
- 〈표 II-1〉 사용자 법정부담금 수준 / 17
- 〈표 II-2〉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2017. 6. 30) / 22
- 〈표 II-3〉 호주 연기금 유형별 개수 및 적립금 규모(2017. 6. 30) / 26
- 〈표 II-4〉 호주 연기금 투자수익률 / 27
- 〈표 II-5〉 호주 연기금 수수료(2016. 7. 1~2017. 6. 30) / 29
- 〈표 II-6〉 호주 퇴직연금제도 감독기관 / 30
- 〈표 III-1〉 MySuper 상품의 표준화된 투자 리스크 수준 / 38
- 〈표 III-2〉 라이프 사이클 펀드 상품 특성 예시 / 42
- 〈표 III-3〉 MySuper 규모(2017. 6. 30) / 43
- 〈표 III-4〉 MySuper 상품 수수료 변화(2011 vs. 2014) / 45
- 〈표 III-5〉 MySuper 보유자의 디폴트 보험 가입(2016. 6. 30) / 49
- 〈표 III-6〉 호주 생명보험 계약고 성장률 / 50
- 〈표 III-7〉 호주 디폴트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2013~2015년) / 51
- 〈표 III-8〉 소매형기금 직종 위험도 차등 사례 / 53
- 〈표 III-9〉 디폴트 보험료 공제로 인한 적립금 감소 효과 / 54
- 〈표 III-10〉 호주 법정 최저인출연령 / 57
- 〈표 III-11〉 호주 인출옵션별 과세 / 58
- 〈표 III-12〉 계좌인출(Allocated) 방식의 최저인출수준 / 59
- 〈표 III-13〉 호주 인출옵션 활용 현황(2017. 6. 30) / 60

■ 그림 차례

- 〈그림 II-1〉 호주 3층 노후소득보장시스템 / 14
- 〈그림 II-2〉 호주 퇴직연금시스템 개관 / 20
- 〈그림 II-3〉 호주 연기금 개수 추이(1996~2016년) / 25
- 〈그림 II-4〉 호주 연기금 수수료 구성 / 28
- 〈그림 III-1〉 MySuper 상품 인가 절차 / 35
- 〈그림 III-2〉 MySuper 상품 공시 사례 1(2018. 6. 30) / 39
- 〈그림 III-3〉 MySuper 상품 공시 사례 2(2017. 6. 30) / 40
- 〈그림 III-4〉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Glide Path 예시 / 41
- 〈그림 III-5〉 연령계층별·성별 MySuper 보유 현황(2017. 6. 30) / 44
- 〈그림 III-6〉 호주 연기금별 보험 가입률(2017. 6. 30) / 50
- 〈그림 III-7〉 호주 연기금별 건당 보험금 지급액 (2016. 7. 1~2017. 6. 30, \$1,000) / 52
- 〈그림 III-8〉 디폴트 보험 보험요율 적용 / 53
- 〈그림 III-9〉 호주 퇴직연금제도 국면 구성 / 55
- 〈그림 III-10〉 Murray Review 인출단계 권고 / 61
- 〈그림 III-11〉 인출상품(CIPR) 최저 요건 / 62
- 〈그림 III-12〉 인출상품(CIPR) 개념도 사례 / 63
- 〈그림 IV-1〉 호주 정부의 퇴직연금정책 추진 개요 / 65

Review of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study on many aspects of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private pension) plan design from an investment and protection perspective in order to identify lessons that can be learnt and applied to Korea's defined contribution system. This includes an overview of the three tier retirement income system, default policy settings and regulation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Our key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First,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a defined contribution plan under trust law—suggests that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is very important. We need an organization that can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under the contract-type governance.

Second, default settings and member inertia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Australian system. The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introduced a default option, i.e. MySuper. The MySuper designation applies to simple, low-cost investment products that can be easily compared across different providers, based on standardized public disclosures. Korean policy authorities should suggest guidance on default investment option such as target return, risk and performance relative to relevant industry benchmark over uniform time frames.

Third, superannuation which provides group insurance (death, permanent disability) within the fund is considered a cost-effective system despite the controversy. In Korea, when establishing a small-medium-enterprise pension fund, it is necessary to use default insurance products to meet the demand of the emergency money of the participants and to prevent early withdrawal.

요 약

I. 서론

- 최근 들어 퇴직연금사업자 및 감독당국은 호주의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에 주목하고 있음
 -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각종 국제비교(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Willis Towers Watson, OECD, 세계은행)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관뿐만 아니라 주목 대상인 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 배경, 지정 요건 및 공시 방법, 디폴트 보험제도 및 인출상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호주의 경우 계약형 지배구조는 미미하고 신탁법(Trust Law)에 근거한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금형과 계약형에 대한 감독이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으로 수렴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연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호주의 사례는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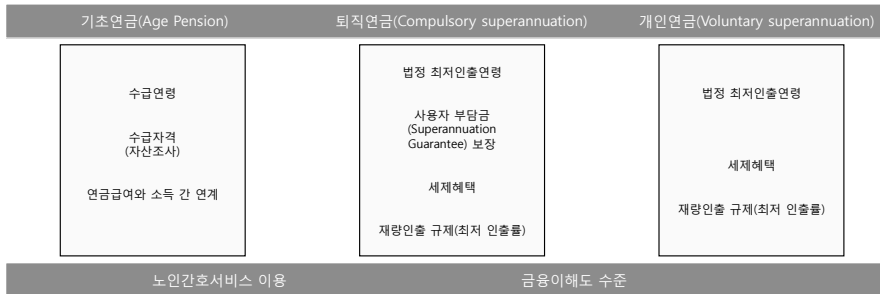
II.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3층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2층인 퇴직연금제도(확정 기여형 중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1층 기초연금은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발하며, 자산 및 소득(퇴직연금 포함)이 증가함에 따라 수령금액이 삭감되는 방식임
 - 2층 퇴직연금은 1992년 사용자 부담금 의무화를 계기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기초연금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는 정책(1992: 3% → 2025: 12%)을 단행함

- 3층 개인연금은 특정 집단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부담금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요약 그림 1〉 호주 3층 노후소득보장시스템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5. 7),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

〈요약 표 1〉 사용자 법정부담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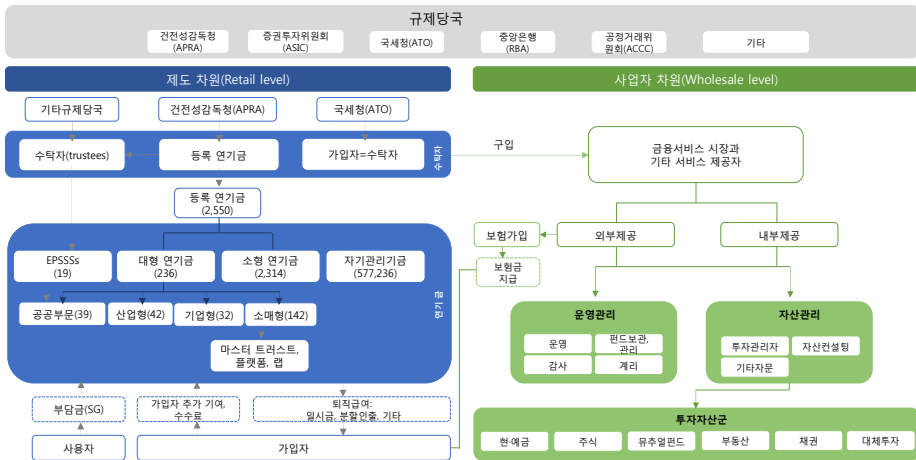
1992 ~1994	1995 ~1997	1998 ~2000	2000 ~2001	2002 ~2014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	6.0	7.0	8.0	9.0	9.5	10.0	10.5	11.0	11.5	12.0

자료: Vanguard(2017. 6),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큰 축은 퇴직연금 기금(연기금) 수탁자, 이를 감독하는 감독당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대별됨

- 연기금은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공부문, 소매형기금 및 자기관리기금으로 구분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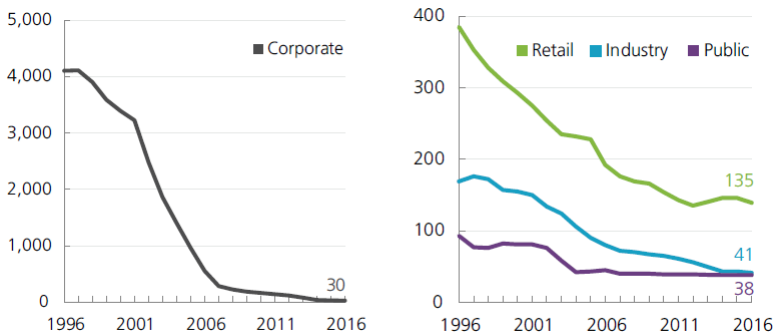
〈요약 그림 2〉 호주 퇴직연금시스템 개관



- 주: 1) 괄호 안 숫자는 2016. 6. 30 기준 감독당국(APRA)에 보고된 것임
 2) EPSSSs: 등록된 연금금 중 공적제도와 자기관리기금을 제외한 것임
 3) 소형 연금금은 집합투자신탁(Pooled Superannuation trusts) 포함한 것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요약 그림 3〉 호주 연금금 개수 추이(1996~2016년)



자료: ASFA(2017. 3),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Industry"

- 규제당국으로는 감독 대상 및 분야에 따라 건전성감독청(APRA: 연금금), 증권 투자위원회(ASIC: 사업자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 국세청(ATO: 자기관리기금)이 있고,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함

〈요약 표 2〉 호주 퇴직연금제도 감독기관

건전성감독청(APRA)	증권투자위원회(ASIC)
· 연기금 지배구조	· 공시요건
· 투자관리	· 민원처리
· 보험 및 아웃소싱 계약	· 금융상품(펀드, 보험, 예금 등)
· 준법감시(유동성, 리스크관리 등)	· 불공정영업행위(자문서비스 포함)
· 수탁자 책무	-

자료: Vanguard(2015. 7),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2017. 6. 30 기준)는 적립금 \$2.5조, 계좌 수 2천 8백여만 개 (전체 인구 2천 5백만 명), 계좌당 적립금 \$84,000, 연기금 수 228개(자기관리기금 제외) 수준임

〈요약 표 3〉 호주 연기금 유형별 개수 및 적립금 규모(2017. 6. 30)

구분	연기금 수 ¹⁾ (개)	계좌 수 (천 개)	적립금 (\$10억)	계좌당 적립금 (\$1,000)
기업형기금	26	329	59	168
산업형기금	40	11,272	543	45
공적기금	37	3,570	561	162
소매형기금	125	12,313	589	47
자기관리기금	598,596	1,128	699	595
집합투자 ²⁾	40	-	136	-
책임준비금 ³⁾	-	-	54	-
전체	2,283	28,612	2,504	84

주: 1) 연기금 개수는 APRA의 감독을 받는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합계임

2) 공동 운용하는 집합투자신탁의 총자산은 기금별 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규모 산출 시 제외됨

3)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의미함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 퇴직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적극적인 위험자산 투자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때 폭락을 경험하였음

- 2017년 투자수익률은 연기금 평균 9.1%(최저: 소매형기금 7.8%, 최대: 산업형기금 10.5%) 수준임

- 투자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포함 여부에 따라 2배 이상(미포함: 9.2% vs. 포함: 4.1%) 차이가 발생함
- 2017년 투자수익률 분포를 75번째 백분위 수(Q3)와 25번째 백분위 수(Q1) 간 격차(사분위 수 범위)로 비교하면, 산업형기금(1.5%p)이 가장 낮고 소매형기금(3.5%p)이 가장 높음

〈요약 표 4〉 호주 연기금 투자수익률

(단위: %, %p)

구분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전체
연평균(2017)	9.2	10.5	9.3	7.8	9.1
25번째 백분위 수(Q1)	7.0	9.4	8.5	4.6	6.2
75번째 백분위 수(Q3)	9.9	10.9	10.9	8.1	9.2
사분위 수 범위(Q3-Q1)	2.9	1.5	2.4	3.5	3.0
5년 평균(2013~2017년)	9.3	10.2	9.7	8.1	9.2
10년 평균(2008~2017년)	4.5	4.9	4.8	3.1	4.1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 2016. 7. 1~2017. 6. 30 기준 연기금에서 지출한 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0.8% 수준(운영관리: 0.5%, 자산관리 0.3%)이며 연기금 특성에 따라 0.5%(공적기금)~0.9%(소매형기금) 분포를 보임

〈요약 표 5〉 호주 연기금 수수료(2016. 7. 1~2017. 6. 30)

(단위: %)

구분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전체
운영관리 수수료(A)	0.2	0.3	0.2	0.8	0.5
자산관리 수수료(B)	0.4	0.4	0.3	0.1	0.3
전체(A+B)	0.6	0.7	0.5	0.9	0.8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III. 디폴트 정책 및 효과

- 호주 정부는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사업자(연기금) 간 경쟁 유도를 위해 2005년 연기금 선택제(Choice of Superannuation)를 도입하였으나,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연기금 변경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계기로 정책당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타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행태를 관찰하고 가입자 행동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게 됨

- 글로벌 금융위기 수익률 폭락을 계기로 Super System Review(또는 Cooper Review) 작업반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부 주도의 디폴트 투자상품(MySuper) 도입을 권고하였음
 - 정부에서 권고안을 수락함에 따라 2013. 7. 1 이후 부담금을 수령하는 연기금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MySuper 상품을 제공해야함
 - 단일상품으로 분산투자 충족(Single Investment Option)
 - 낮은 수수료
 - 표준화된 보고체계
 - 적용제외(Opt-Out) 방식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상품 제공
 - 감독당국은 디폴트 투자상품이 충족시켜야 할 요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폴트 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요건, 공시항목 및 공시양식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MySuper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 목표 수익률(Return Target)
 - 과거 수익률(Return For Previous Financial Years)
 - 목표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간 비교
 - 투자 리스크 수준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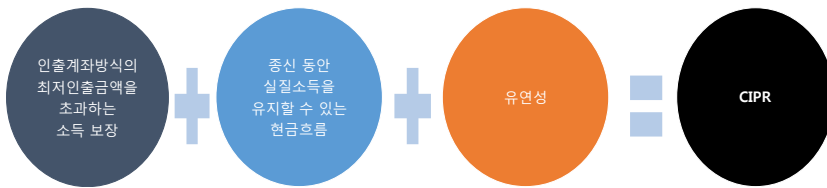
- MySuper 비중(2017. 6. 30)은 계좌 수 기준 56.3%, 적립금 기준 33.1%에 달하며 주로 활용하는 계층은 적립금 규모가 작은 청년층과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디폴트 투자상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펀드로서 라이프 사이클 펀드, 목표만기 펀드 및 혼합형 펀드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 펀드 활용도가 가장 높음
 - MySuper 도입으로 수수료 수준이 1% 이하(0.8%)로 낮아졌으며 소매형기금의 하락 폭이 가장 두드러졌음(적립금 대비 1.61% → 0.96%, 적립금 \$5,000 대비 연간 \$144 → \$120, 적립금 \$10,000 대비 연간 \$385 → \$263, 적립금 \$50,000 대비 연간 \$867 → \$551)

- MySuper 상품을 인가받고자 하는 연기금 수탁자는 디폴트(적용 제외) 방식으로 단체보험상품(필수: 사망보험, 영구장해보험, 선택: 소득보상보험)을 제공해야 함
 - MySuper 보유자 중 디폴트 보험 가입률(2017. 6. 30)은 사망보험 75.8%, 영구장해보험 67.8%, 소득보상보험 28.2% 수준임
 - 디폴트 보험제도로 인해 호주의 생명보험시장은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 성장세가 더 높음
 - 2013~2015년 동안 연기금 단체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건수는 20만 건을 넘어 서고, 건당 지급 금액도 \$67,000에 달해 위험보장 기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기금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보험의 장점은 단체보험방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임
 - 단체보험에서는 성/연령/직종 간 단일률을 적용하는 경향이 높는데, 이로 인해 위험이 낮은 저연령, 사무직 계층이 위험이 높은 고연령, 생산직 계층을 보조하게 됨
 - 아울러 정액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질수록 취약 계층의 투자재원은 감소하게 되어 적립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 디폴트 보험에 대해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보험이 호주 국민의 보장 갭(Underinsurance)을 메꾸는 긍정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인출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디폴트 투자상품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인출상품(CIP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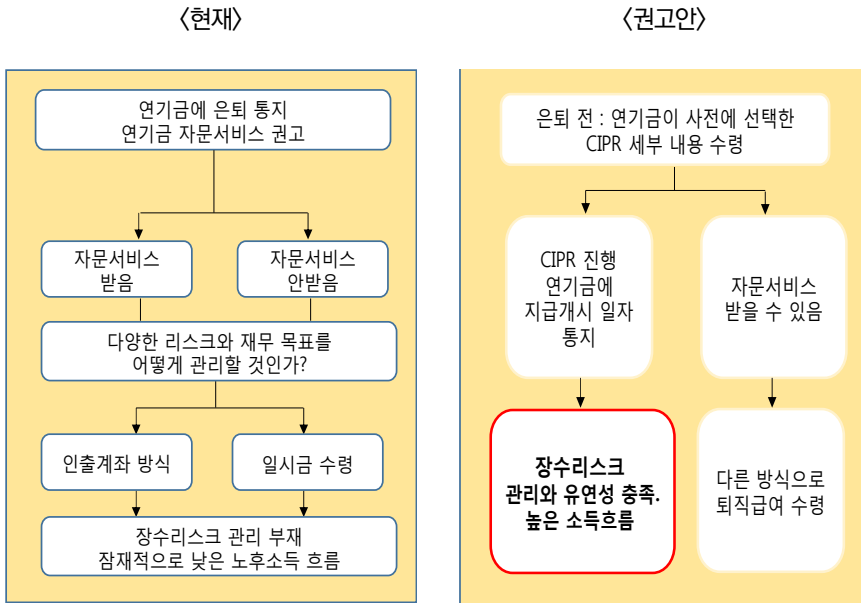
〈요약 그림 4〉 인출상품(CIPR) 최저 요건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6. 12. 15),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s for Retirement", *Discussion Paper*

- Financial System Inquiry(Murray Review)에서는 인출단계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요약 그림 5〉 Murray Review 인출단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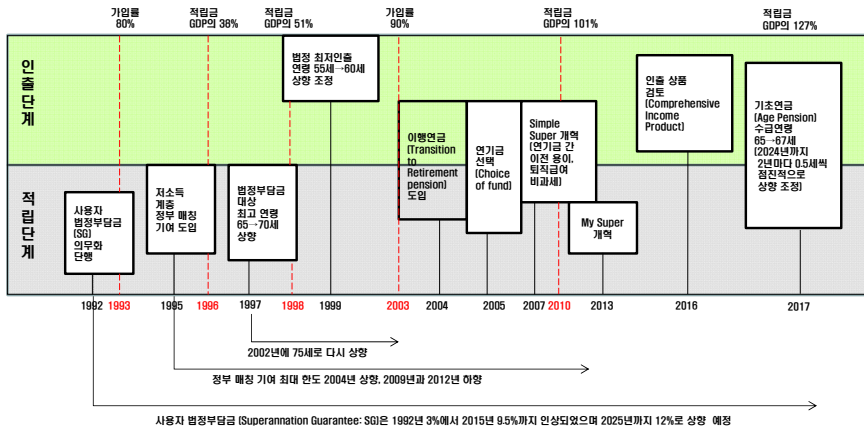
주: CIP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

자료: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 Report(2014. 11)

IV. 시사점 및 맺음말

- 호주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비전을 공적(기초)연금의 보완/대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립단계 및 인출단계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구현해왔음
 - 사용자 부담금을 3%에서 12%로 인상하였으며, 법정 최저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아 노후소득을 위한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그 결과 2017년 기준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는 GDP의 127%에 달하며, 가입률도 94%를 넘어섰음

〈요약 그림 6〉 호주 정부의 퇴직연금정책 추진 개요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5),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에서 저자가 수정 후 작성함

- 가입자 행동분석을 통해 정부 주도로 디폴트 투자상품(MySuper)을 도입하고, MySuper의 인가요건으로 디폴트 보험(사망보험 및 영구장해보험)을 제공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통제하고, 보장 갭을 완하시켰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제도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예: 독립지배구조 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디폴트 투자 옵션에 대한 지침(상품 및 공시 요건)을 제정하고 시장참여자가 활용하도록 함
 - 향후 중소기업연합형 연기금제도 도입 시 정부가 매칭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중도인출 니즈를 감소시키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 내에 보존하도록 유도함

I. 서론

노후소득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로 인해 선진국의 연금시스템이 재구조화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 의료기술 발달, 기대수명 증대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IT 혁명, 산업구조 고도화로 근로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기대되는 투자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시스템을 설계하는 정부, 여기에 참여하는 사용자, 가입자 및 서비스 제공자(금융회사) 모두 제도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는 호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에서 매년 발표하는 30여 개 국가의 연금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호주는 덴마크, 네덜란드와 함께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표 I-1〉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2017)

구분	종합지수	세부지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결성
덴마크	78.9	76.5	79.8	81.3
네덜란드	78.8	78.0	73.5	87.5
호주	77.1	75.3	73.0	85.7
한국	47.1	46.9	46.8	47.9
30개국 평균	59.9	60.9	50.8	71.2

주: 평가대상 30개국 중 상위 3개국과 우리나라 자료만 인용한 것임
자료: Mercer(2018),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2017"

MMGPI 종합지수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 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완결성(Integrity)’을 평가하여 산출한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1992년 처음 법정 의무화 조치 이후 2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다. 사용자의 의무 부담률을 속도감 있게 인상(3% → 12%)하고,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적용 제외되는 가입자 범위를 아주 좁게 한정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다. 자산 규모는 1996년 \$0.25조(GDP의 46%)에서 2017년에는 \$2.2조(GDP의 130%) 규모로 성장하였다.¹⁾

Willis Towers Watson(2018)에서도 과거 20년간 호주 연금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였다. 연평균 12.1%씩 성장한 결과,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전 세계 4위, 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 비중은 2위를 기록하였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선진국²⁾과 달리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중심 시장으로 총자산의 87%가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 가입자는 모두 확정기여형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후원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94%에 달할 정도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퇴직연금사업자와 감독당국도 호주 퇴직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호주 퇴직연금기금 관계자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기금형이 허용될 경우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³⁾ 선행연구는 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 연금 정책, 세제, 디폴트 투자옵션(MySuper), 중도인출 규제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중심이었다(권문일 2001; 김

1) 호주의 회계연도(FY: Fiscal Year)는 당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이므로 본고에서의 연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FY 기준을 의미하며, 화폐단위인 \$는 호주 달러를 의미함

2) 주요 선진국의 DC 비중은 미국 60%, 영국 18%, 네덜란드·캐나다 5%, 일본 4% 수준임

3)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 4. 10),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사용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계약형과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함.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독립된 수탁법인(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야함

병덕 2017; 김원식 2014; 남재우 2017; 류건식·강성호 2017; 류건식·이상우 2013; 미래셋퇴직연금연구소·금융투자협회 2010; 이경희 2017; 전성주·조영현 2016).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뿐만 아니라 2013년 전격 도입된 디폴트 투자상품의 정책 목표, 지정 요건 및 공시 방법과 호주만의 독특한 방식인 디폴트 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인출상품 관련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에 대해 개관한다. 구체적으로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와 퇴직연금 시스템에 대해 개관하고, 연기금 시장구조 및 감독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적립단계의 디폴트 투자상품 및 디폴트 보험상품에 대해 소개하고, 인출단계의 상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마지막 IV 장에서는 II 장과 III 장의 내용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II.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1.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

호주는 일본, 독일, 영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인구고령화가 심각하지 않다. 호주 정부(2015)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9명(2005~201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4%(2010년)이고, 중위연령은 36.8세(2010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모범사례로 언급된다(OECD 2017; World Bank Group 2016).

1층은 일반재정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Age Pension)이며, 2층은 사용자가 최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Compulsory Superannuation), 3층은 자발적으로 추가 기여하는 개인연금(Voluntary Superannuation)으로 구성된다. 이는 2050년 이후 심각해지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추구한 결과이다.

〈그림 II-1〉 호주 3층 노후소득보장시스템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5. 7),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

가. 1층 기초연금제도

호주에서 1층에 해당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제도(Age Pension)로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한다.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해 조달하며, 수급자는 자산조사(Means-Testing)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기초연금은 사망 시까지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전국민에 대해 최저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기여 기초연금은 1909년 7월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시 2층 퇴직연금 적립금과 기타 금융·비금융자산은 포함되지만 주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넓은 편이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최고 한도는 자산 기준 \$250,000이다. 급여 수준은 단독 가구주는 연간 \$23,100이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한도는 \$34,820이다. 급여 수준은 남성 평균 소득 대비 단독가구 28%, 부부 가구 41% 수준이며, 자산 및 소득(퇴직연금 포함)이 증가하면 수령금액이 삭감되는 방식(Taper Rate)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이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17. 7. 1부터 65.5세로 조정하였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늦추어 2023. 7. 1부터는 67세가로 높아질 예정이다.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보완·대체하고자 한다.

나. 2층 퇴직연금제도

1) 연혁

호주에서 2층에 해당하는 노후소득보장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기업)연금제도가 다. 호주에서 최초의 퇴직연금제도는 1842년 Bank of Australia(ANZ Bank)에 의해 설립되었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를 일컫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은퇴 후 사용자로부터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적연금(Pension)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19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제도는 공공부문, 대기업 등 일부 선택된 집단(남성, 사무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전문직과 사무직에 국한되었다. 1974년 기준으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32%만이 가입되어 있었고, 대부분 확정급여형 형태로 사용자 재량권이 매우 커서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Clare and Craston 2007)⁴⁾. 이런 불균등한 가입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사관계 측면을 통해 표출되었다.

1983년 선출된 Hawke 노동당 정부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적자, 대외채무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을 증대시켜야 했다. 그 수단으로 생산성 보상 성격의 퇴직연금을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업형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개입으로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87년부터 1991년 동안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입률이 거의 2배(40% → 79%) 가까이 상승하였다.

가입률은 급증하였지만 부담률 3%는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1991년 호주 정부와 노동조합연맹(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은 부담률 인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2. 7. 1부터 사용자 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시켰다. 여기서 보증(Guarantee)은 투자수익이나 은퇴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을 실행시키기 위해 징세권을 동원하였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미납한 부담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및 징수 관련 행정비용까지 부과했다. 국세청이 개입하여 미납금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함으로써 2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기능이 강화되었다.

4) 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사용자 간 부담금, 수급권, 이전성 등이 상이함

2) 사용자 법정부담금

〈표 II-1〉은 정부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인상해온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1992. 7. 1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당시 3%에서 시작하였으나, 3년 후에 6%로 높아졌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14. 7. 1에 9.0%에 도달하였다.

호주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12%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이후 33년만에 법정 사용자 부담금이 4배(1992년: 3% → 2025년: 12%)로 높아진 것이다.

〈표 II-1〉 사용자 법정부담금 수준

(단위: %)

1992 ~1994	1995 ~1997	1998 ~2000	2000 ~2001	2002 ~2014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	6.0	7.0	8.0	9.0	9.5	10.0	10.5	11.0	11.5	12.0

자료: Vanguard(2017. 6),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적용 예외자는 ① 월 소득 \$450 미만, ② 70세 이상, ③ 18세 미만·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다. 적용 제외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국세청에서 부담금 납입을 강제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이 취업자의 94%에 달할 정도로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다. 3층 개인연금제도

호주에서 3층에 해당하는 노후보장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세전(Before-Tax)소득이나 세후(After-Tax)소득을 활용하여 가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부담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매칭 기여를 통해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1) 가입자 세전 기여(Concessional/Salary Sacrifice)

임금 근로자는 법정 사용자 부담금(SG) 외에 자신의 세전 소득을 활용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 부담금 형태로 추가 기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세전소득에서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017. 7. 1 기준 \$30,000(49세 미만), \$35,000(49세 이상)이다.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담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 과세하며 한도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호주에서는 사용자의 법정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 모두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정률(15%) 과세한다. 개인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이 최고 45%이고, 여기에 메디케어 부담금 2%를 가산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호주에서도 2018. 7. 1부터 세전 추가 기여(Catch-Up)를 허용하였다. 총 적립금 \$500,000 미만 가입자가 활용하지 않은 세전 기여 허용한도를 5년간 이연해서 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마련을 위한 용도로 퇴직연금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입자 세후 기여(Non-Concessional / After-Tax)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세후 소득(가치분소득)을 활용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호주 노동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납부하는 법정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을 적립할 수 없다. 가입자 세후 기여방식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연간 \$500 한도)⁵⁾을 부여하며, 자영업자 중 30% 정도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부담금을 납부한다.

또한, 가입자의 배우자도 세후 자금을 활용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배우자 기여 시 세제혜택(연간 \$540 한도)을 부여한다. 배우자 부담금제도는 소득이 높은 배

5)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Government Co-Contribution이라고 한다.

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37,000 이하)의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남성/여성, 법률혼/사실혼 모두에게 허용되며, 70세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는 가계 차원의 노후저축을 최적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세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배우자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저소득 계층 지원

호주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세표준소득 \$37,000 이하)의 적립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LISTO: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⁶⁾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 한도)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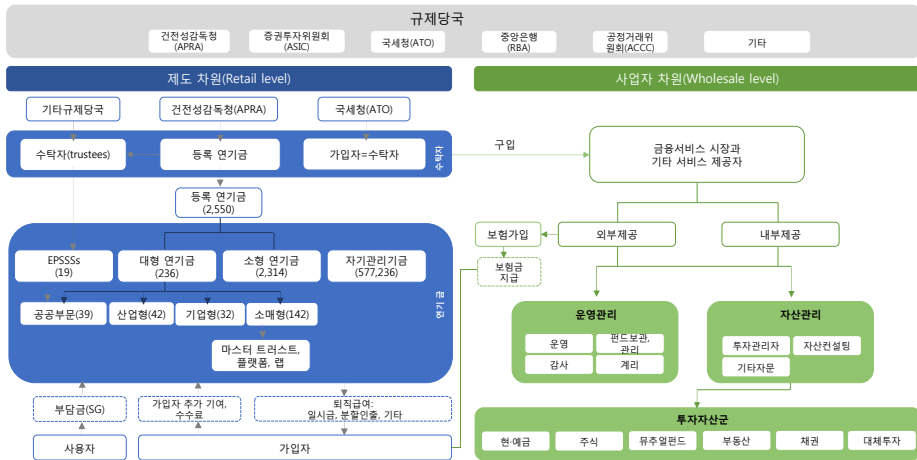
2. 퇴직연금제도

가. 개관

여기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시각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II-2>와 같다. 퇴직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이라 함), 수탁자 및 이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이 존재하며, 다른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시장과 사업자가 존재한다.

6) 2012~2016년에는 Super Co-Contribution, Low-Income Super Contribution(LISC)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7년부터 LISTO로 변경됨

〈그림 II-2〉 호주 퇴직연금시스템 개관



- 주: 1) 괄호 안 숫자는 2016. 6. 30 기준 감독당국(APRA)에 보고된 것임
 2) EPSSs: 등록된 연기금 중 공적제도와 자기관리기금을 제외한 것임
 3) 소형 연기금은 집합투자신탁(Pooled Superannuation trusts) 포함한 것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계약형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신탁법(Trust Law)에 근거한 제도이다. 수탁자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⁷⁾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자(Trustee)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가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관리하고, 가입자 이익(Best Interest Of Beneficiaries)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들은 연기금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탁자 서비스(Trustee Services)
- 연기금 관리
- 자산관리 서비스와 컨설팅

7) 관련 법령은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과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Regulations 1994가 해당되며, Corporations Act 2001에서 규정한 인가, 공시 등도 해당됨

- 자산보관 서비스(Custodial Services)
- 보험
- 투자자문

위에서 열거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연기금 내부 및 외부에 다수 존재하므로 가입자 이익에 가장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형 연기금은 일체형(Bundle) 계약 체결을 선호하나, 대형 연기금은 분리형(Unbundle) 계약을 선호한다. 대형 소매은행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금융회사의 경우 그룹 계열사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조달할 수 있다.⁸⁾

대부분의 연기금은 가입자들에게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에 대한 옵션을 제공한다.⁹⁾ 자문은 가입자의 상황(투자목표, 리스크 허용도, 재무상황 또는 니즈 등)에 대한 맞춤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인 서비스로서 추천(Recommendation)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입자별 상황을 고려하지만, 그 범위가 특정 범주로 한정되는 서비스이다. 연기금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문 비용은 연기금의 운용관리수수료에 의해 충당된다. 세 번째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서 관련 비용은 서비스를 받는 특정 가입자가 부담한다.

나. 제도 유형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이 지배적이다. 2017. 6. 30 기준 2천 7백만여 개의 계좌에서 확정기여형이 95.6%를 차지하며,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보유한 비중은 1.1%로 96.7%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상태이다.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 비중이 76.8%에 달한다. 주요국의 확정기여형 비중이 미국 60%, 영국

8) 예를 들면 대형 4대 은행과 AMP 등이 해당됨

9) 연기금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시장임. 소매형기금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산업형기금과 공공부문에서는 본체 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Industry Fund Services는 산업형기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약 110명의 자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18%, 네덜란드·캐나다 5%, 일본 4%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Vanguard 2017).

〈표 II-2〉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2017. 6. 30)

구분	계좌 수 (천 개)	비중(%)	적립금 (\$Million)	비중(%)
확정급여형(DB)	910	3.3	305,225	17.7
확정기여형(DC)	26,233	95.6	1,327,443	76.8
DB&DC	310	1.1	94,824	5.5
전체	27,453	100.0	1,727,492	100.0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다. 연기금 유형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갖는 퇴직연금기금 중심으로 운영된다.¹⁰⁾ 가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연기금(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매형기금만 영리조직이며 나머지 4개 연기금은 비영리조직이다.

연기금의 이익단체로서 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 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nuation Trustees)와 금융서비스사업자협회(FSC: Financial Services Council)¹¹⁾가 존재한다. AIST는 산업형기금, 기업형기금 및 공공부문 기금으로 구성되어 수탁자와 연기금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 컨설팅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며 FSC는 소매형기금을 운영하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및 금융자문네트워크의 이해를 대변한다.

10) 호주에서도 기금형이 아닌 방식으로 퇴직저축계좌(RSAs: Retirement Savings Account)가 존재함. 이는 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I에서 기술함

11) 기존 IFSA(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가 2010년부터 Financial Services Council로 명칭을 변경함

1) 기업형기금(Corporate Funds)

기업형기금은 단일 사용자 또는 상호 연관된 복수 사용자가 운영하는 '본체(In-House)' 방식의 연기금이다. 의사결정기구인 수탁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가입자격은 피고용인으로 제한되지만, 연기금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2) 산업형기금(Industry Funds)

산업형기금은 주로 특정 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기금이다. 가입대상이 특정 산업종사자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형기금과 경쟁관계에 있다. 대표적인 산업형기금은 UniSuper(교육), HESTH(건강), CBUS(건설 및 건축), HostPlus(병원) 등이다. 산업형기금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본체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적기금(Public Sector Funds)

공적기금은 호주 연방, 주 및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용관리 서비스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 이직 시 퇴직급여의 이전도 가능하다. 공적기금의 50% 정도는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해당되는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는다.

4) 소매형기금(Retail Funds)

소매형기금은 주로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연기금이다. 대표적으로 Bendigo Smart Start Super(Bendigo Bank), ING DIRECT Living Super(ING DIRECT), Colonial First State(Commonwealth Bank), OnePath

(ANZ Bank)¹²⁾ 등이 있다.

소매형기금은 영리조직으로 운영되며, 수탁자는 연기금에서 고용할 수도 있고 사업자 소속 직원이 될 수도 있다. 투자 상품으로는 자신이 제조한 상품과 외부 자산운용업자가 제조한 상품을 제공하며, 보험대리점이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를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매형기금은 일반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별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소매형기금이지만 수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는 집합투자(Master Trusts) 방식으로 자산이 운용된다. 소매형기금은 다른 연기금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형 은행그룹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일부로서 퇴직연금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호주에서 퇴직연금제도와 은행산업은 상호 연계되어 금융부문을 지배하고 있다.¹³⁾ 예를 들면, 은행 그룹 산하 자산관리, 금융자문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자회사를 통해 연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소매형기금 적립금의 55%를 차지하면서 운영관리수수료와 상품판매 이익을 수취한다. 은행 자산의 약 25% 정도가 연기금으로부터 수취한 것인데,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안전자산인 은행예금 수요가 높아진 결과이다.

5) 자기관리기금(SMSFs: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s)

호주에서 자기관리기금은 근로자 또는 은퇴자가 자신의 연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Do-It-Yourself")이다. 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는데, 최대 4인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 1~2인 가입자가 대다수이다.

12) 2017년 하반기 이후 호주 은행그룹들은 보험자회사를 매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험 부문의 수익성 저하, 금융그룹 자본 확충 필요성, 불완전판매에 따른 평판위험 등 때문이다. ANZ Bank도 자회사인 OnePath를 스위스의 Zurich Group에 매각할 예정임(전용식·정인영 2018. 1. 2)

13) 호주의 4대 은행은 Commonwealth Bank Group, National Australia Bank, ANZ Banking Group, Westpac Banking Corporation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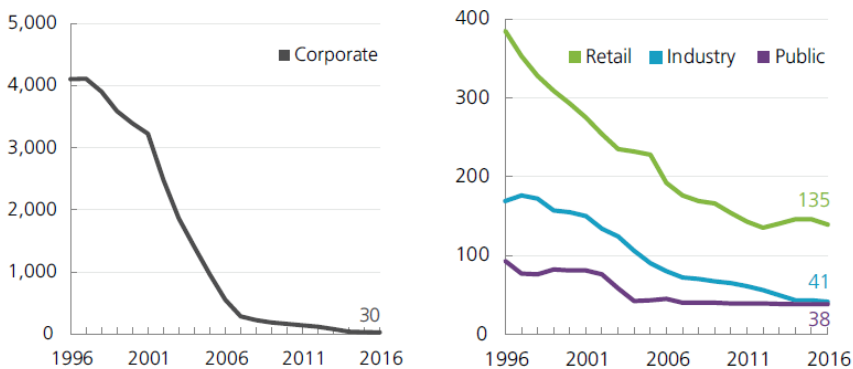
라. 연기금 추이

1) 개수 및 적립금

호주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연기금 간 통합으로 인해 지난 20년 간 연기금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기금 내에서의 활발한 합병 활동으로 인해 소매형기금과 산업형기금 개수 역시 지난 20년 동안 각각 64%, 76% 감소하였다. 공공부문 연기금도 공공부문 통합과 민영화 조치로 인해 59% 감소하였다.

가장 감소세가 두드러진 연기금은 기업형기금이다. 기업형기금 수는 1996년 4천 개에 달하였으나 2016년 말에는 30개에 불과했다. 폐쇄된 기업형기금의 적립금은 소매형기금이나 산업형기금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형기금에 비해 소매형기금과 산업형기금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운영관리비가 저렴하고, 상품옵션이 풍부하고, 운용전문가가 많다는 장점이 작용한 결과이다.¹⁴⁾

〈그림 II-3〉 호주 연기금 개수 추이(1996~2016년)



자료: ASFA(2017. 3),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Industry"

14) 기업형기금, 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및 공적기금 개수가 크게 감소한 데 비해, 자기관리기금 개수는 1996년 10만 개에서 2016년 58만 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자에 대한 자율권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8. 6. 30 기준 APRA의 감독을 받는 연기금은 228개이며, 전체 적립금 규모는 \$2.5조이다. 자기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소매형기금의 규모가 40%를 초과한다. 시장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소매형기금에서는 대형 4개 은행그룹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

〈표 II-3〉 호주 연기금 유형별 개수 및 적립금 규모(2017. 6. 30)

구분	연기금 수 ¹⁾ (개)	계좌 수 (천 개)	적립금 (\$10억)	계좌당 적립금 (\$1,000)
기업형기금	26	329	59	168
산업형기금	40	11,272	543	45
공적기금	37	3,570	561	162
소매형기금	125	12,313	589	47
자기관리기금	598,596	1,128	699	595
집합투자 ²⁾	40	-	136	-
책임준비금 ³⁾	-	-	54	-
전체	2,283	28,612	2,504	84

주: 1) 연기금 개수는 APRA의 감독을 받는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합계임

2) 공동 운용하는 집합투자신탁의 총자산은 기금별 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규모 산출 시 제외됨

3)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의미함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표 II-3〉은 2018. 6. 30 기준 연기금 유형별 개수 및 적립금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계좌 수는 2천 860만 개에 달하며, 계좌당 평균 적립금 규모는 \$84,000이다. 연기금 유형별로 보면, 기업형기금(\$168,000)과 공적기금(\$162,000)이 높는데 비해, 산업형기금(\$45,000)과 소매형기금(\$47,000)은 낮은 수준이다.

2) 투자수익률

〈표 II-4〉는 APRA 감독을 받는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실적이다. 2017년 전체 연기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9.1%이며, 산업형기금이 10.5%로 가장 높고, 소매형기금이 7.8%로 가장 낮다. 75번째 백분위 수와 25번째 백분위 수 간의 차이는 소매형기금이

3.5%p로 가장 높고, 산업형기금이 1.5%p로 가장 낮다.

최근 5년 수익률(2013~2017년) 평균은 9.2%인 데 비해, 최근 10년 수익률(2008~2017년) 평균은 4.1%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이 높아 투자수익률이 급락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8~2009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II-4〉 호주 연기금 투자수익률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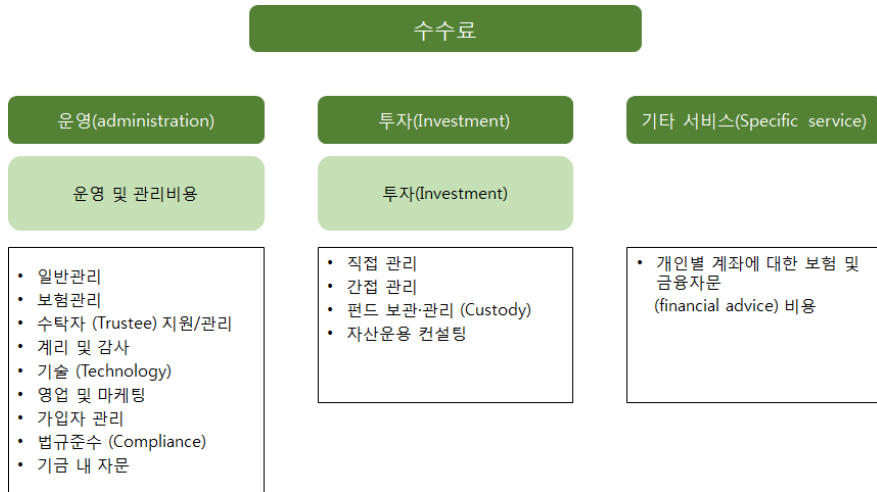
구분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전체
연평균(2017)	9.2	10.5	9.3	7.8	9.1
25번째 백분위 수(Q1)	7.0	9.4	8.5	4.6	6.2
75번째 백분위 수(Q3)	9.9	10.9	10.9	8.1	9.2
사분위 수 범위(Q3-Q1)	2.9	1.5	2.4	3.5	3.0
5년 평균(2013~2017년)	9.3	10.2	9.7	8.1	9.2
10년 평균(2008~2017년)	4.5	4.9	4.8	3.1	4.1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3) 수수료 구성

앞서 언급한 투자수익률은 수수료 및 비용을 차감한 후 순수익률이다. 호주 연기금에서 수수료는 매우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지만,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관리, 자산관리(투자)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관리 수수료는 정액(\$)과 적립금 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림 II-4〉 호주 연기금 수수료 구성



주: 일부 파악할 수 없는 비용은 누락되었음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표 II-5〉는 APRA 감독대상인 연기금이 2017년에 지출한 수수료 수준을 보여준다. 전체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 대비 0.8%(운영관리 수수료 0.5%, 자산관리 수수료 0.3%)로 파악되었다. 연기금별로 보면, 공적기금(0.5%)이 가장 낮고, 기업형기금(0.6%), 산업형기금(0.7%), 소매형기금(0.9%) 순이다. 소매형기금은 운영관리 수수료가 0.8%로 타 연기금 대비 높은 수준이다. 소매형기금에서 높은 수수료가 가입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표 II-5〉 호주 연기금 수수료(2016. 7. 1~2017. 6. 30)

(단위: %)

구분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전체
운영관리 수수료(A)	0.2	0.3	0.2	0.8	0.5
자산관리 수수료(B)	0.4	0.4	0.3	0.1	0.3
전체(A+B)	0.6	0.7	0.5	0.9	0.8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마. 감독체계

1) 분야별 감독

호주의 퇴직연금산업에 대한 감독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한 소위 양봉형 방식을 따른다. 연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감독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담당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는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주요 감독 분야를 정리하면 〈표 II-6〉과 같다.¹⁵⁾

큰 틀에서 보면, APRA는 은행, 보험, 연기금을 통합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 감독영역은 연기금의 지배구조, 투자관리, 보험, 리스크관리, 수탁자 책무 등이다. 이에 비해 ASIC는 소비자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퇴직연금 관련 공시, 민원,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 등을 관장한다.

15) 자기관리기금(SMSFs)은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감독함. 4인 이하 가입자가 수탁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적용함

〈표 II-6〉 호주 퇴직연금제도 감독기관

건전성감독청(APRA)	증권투자위원회(ASIC)
· 연기금 지배구조 · 투자관리 · 보험 및 아웃소싱 계약 · 준법감시(유동성, 리스크관리 등) · 수탁자 책무	· 공시요건 · 민원처리 · 금융상품(펀드, 보험, 예금 등) · 불공정영업행위(자문서비스 포함)

자료: Vanguard(2015. 7),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APRA의 감독을 받은 연기금 수탁자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수탁자가 자문서비스와 같은 특정한 영업행위를 수행하거나 일반인 대상 연기금의 수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ASIC에서 담당하는 금융기관인가(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호주의 퇴직연금 규제 및 감독은 영역별·연기금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감독을 위해서는 감독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APRA는 ASIC, AT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감독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이를 통해 중복 감독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2) 데이터 구축

퇴직연금상품과 같이 수요 측면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¹⁶⁾에서는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거래조건을 탐색하여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호주 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유용한 정보를 집적하여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다. APRA는 Financial Sector (Collection of Data) Act 2001에 근거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징구¹⁷⁾하는데 주요 항목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6)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구매 빈도가 낮으며, 구매 의사결정과 급부 발생 시점 간 기간 차이가 매우 긴 상품이 해당됨

- 지배구조
 - 투자 관련 지배구조
 - 투자성과
- 리스크관리
- 기타
 - 보험계약
 - 디폴트 투자 상품(MySuper에 대해서는 후술) 이전
 - 적립금 이전(Eligible Rollover Fund Transition)
- 재무정보
 - 재무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재무성과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 수수료
 - 가입자 정보
 - 상품 대시보드(Product Dashboard) 등

APRA는 위 데이터 중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ySuper 보고서

동 보고서는 디폴트 투자상품인 MySuper에 대한 정보(“MySuper Statistics”)를 개별 제품별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 특성, 대시보드 측정, 자산배분 대상 및 범위, 투자 성과, 비용,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및 URL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는 APRA의 규제대상인 MySuper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발표 주기는 분기 및 연간이다.

17) 데이터는 감독당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D2A: Direct to APRA)를 사용하여 전자방식으로 전송됨

나) 연기금 통계

연기금 통계(“Annual Fund-level Superannuation Statistics”)는 전체 퇴직연금산업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이다. APRA의 감독대상인 가입자 4명 이상 연기금에 대해 특성 및 구조, 투자성과 및 재무상태, 수수료 및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한 상세 내용과 수탁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다) 연기금 투자성과

연기금의 투자성과(“Quarterly Superannuation Performance”)는 퇴직연금산업 전체에 대한 재무성과, 재무상태, 주요 비율 및 자산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퇴직연금 연차보고서

퇴직연금에 대한 연차보고서(*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는 정책당국, 감독기관, 수탁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발표한다.

감독당국은 위와 같은 데이터 구축 및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공정한 연구 활동 및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유도한다.

Ⅲ. 디폴트 정책 및 효과

1. 디폴트 투자

가. 연기금 선택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에서 가입자는 두 단계에 걸친 투자 관련 선택을 하게 된다. 첫번째는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연기금을 선택해야 하며, 두 번째는 선택한 연기금 내에서 제시하는 투자옵션 중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992년 퇴직연금 의무화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선택한 연기금에 가입해야 했고, 대부분의 연기금에서는 가입자에게 투자옵션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가입자의 위험선호도를 감안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연기금 내에서 투자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기금에 대해서도 가입자 선택을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가입자의 연기금 선택권이 부여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적립금을 다른 연기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었다.¹⁸⁾ 이에 따라 가입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금융회사가 설립한 연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전성주·조영현 2016). 아울러 사용자가 지정한 디폴트 연기금에 사용자 부담금 납입은 지속한 상태에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다른 연기금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연기금 선택권 보장에 따라 가입자는 200개가 넘는 연기금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18) 이러한 조치는 가입자 선택권 보장법(Choice of Superannuation Fund Legislation)에 의한 것임

투자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연기금을 변경한 가입자 비중은 높지 않았고, 연기금을 변경한 가입자의 40~53%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연기금 변경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수의 연기금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효율도 발생하였다.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제공한 다수의 연기금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계좌를 이전·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Super Stream)을 운영하고 있다.¹⁹⁾

나. 디폴트 투자(MySuper)상품

1) 도입 배경

호주의 퇴직연기금 내 투자 관련 디폴트 옵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규제 없이 운영되었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70~90%)을 주식에 배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익률이 급락하였다.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된 1997~2009년 연기금 수익률은 연 3.04%에 불과하다(Long 2010). 이는 물가상승률 2.8%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은행정기예금(4.5%), 주가지수상승률(6.6%)보다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익률 폭락을 계기로 투자 관련 디폴트 옵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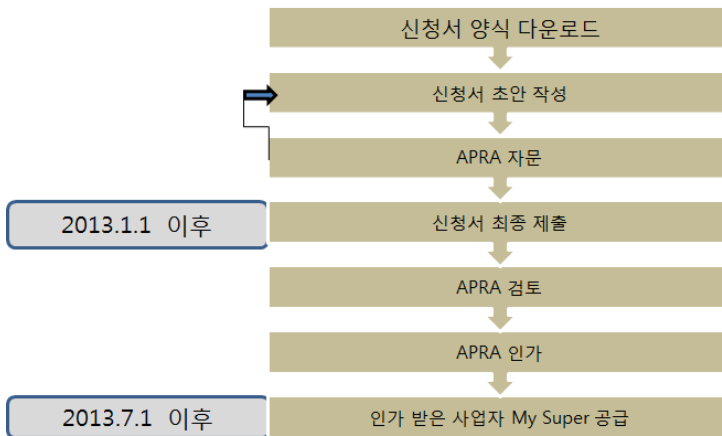
호주 정부는 Super System Review(또는, Cooper Review) 작업에 착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입자의 인식 부족,²⁰⁾ 부적절한 공시, 사후관리 미흡, 높은 운영비용 및 상품의 복잡성을 지적하였다. ASIC, APRA, ATO가 상호 협력하여 연기금을 감독하였지만 연기금의 투자성과에 대한 영향

19) 개인별로 흩어져 있는 연기금 통합 작업은 2013. 7. 1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기금 간 데이터 양식 및 부담금 송금 방식을 표준화하고, 금융데이터와 가입자데이터를 연계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송부하도록 함

20) 가입자의 대다수(80% 정도)가 적극적으로 투자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력은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기존의 디폴트 옵션을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낮고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아 정부가 관여하는 디폴트 옵션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2011년 Stronger Super 개혁을 단행하였고, 새로운 디폴트 상품인 MySuper를 도입하였다. 이전 디폴트 투자상품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비용 효과적인 상품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APRA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²¹⁾

〈그림 III-1〉 MySuper 상품 인가 절차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2. 10), "Instruction Guide: Application Form-Authority to Offer a MySuper Product"

2) 감독당국의 인가 요건

2013. 7. 1 이후 APRA 감독 대상 연기금 중 사용자 부담금을 수령할 수 있는 디폴트 연기금으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MySuper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해야 한다. MySuper 상품 지정요건은 사업자 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저비용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1개 상품 내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²²⁾를 구축해야 하며, 표준 수준의 보험 가입

21) 기존 디폴트 옵션 계좌는 2017. 7. 1까지 MySuper로 이전하도록 조치하였음

22) MySuper는 잘 분산된 단일 옵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디폴트 보험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APRA가 MySuper 인가조건으로 제시한 최저요건은 다음과 같다(MySuper Consultation Working Group 2011).

- 단일상품으로 분산투자 충족(Single Investment Option)
- 낮은 수수료
- 표준화된 보고체계
- 적용제외(Opt-Out) 기준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제공²³⁾

MySuper 상품은 소극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 상품 내에서 분산투자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요구한다. 연기금은 최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국면에 따라 자산배분 변화가 내재되어 있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펀드나 목표만기(Target Date) 펀드를 MySuper 상품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펀드는 가입자의 은퇴시기를 고려하여 연기금 수탁자가 자동적으로 투자자산 배분 비중을 변경한다. 대체적으로 젊은 시기에는 은퇴시점까지 투자 가능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투자를 하며, 점차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면 적립금을 보존하기 위해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3) 감독당국의 공시 요건

감독당국은 디폴트 투자상품의 요건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기금 수탁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MySuper 상품의 핵심 성과를 공시(MySuper Product Dashboard)하도록 하였다. 이는 디폴트 투자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2013. 12. 31부터 실행되었다. 외부에 공개해야 할 내용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개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RA 규정(Reporting Standard SRS 700.0-Product Dashboard)²⁴⁾에 기술되어 있다.

23) Prudential Standard SPS 250 Insurance Superannuation

24) <https://www.apra.gov.au/sites/default/files/draft-reporting-standard-srs-700.0-product-dashboard-december-2015.pdf>

- 목표 수익률(Return Target)
- 과거 수익률(Return For Previous Financial Years)
- 목표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간 비교
- 투자 리스크 수준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목표 수익률은 MySuper 상품이 장래 10년 동안 달성하기로 설정한 수익률을 의미한다. 연기금 수탁자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며 변경할 책무를 부담한다. 목표 수익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며, 수수료 및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로 표현된다. 목표 수익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ASIC에서 수탁자의 행동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MySuper 상품이 실제 달성한 수익률은 과거 10년 성과(투자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전체 투자기간)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수익률은 MySuper 상품에 투자한 대표 가입자²⁵⁾에게 귀속된 순수익률²⁶⁾을 의미한다.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간 비교는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연도별 실제 수익률은 막대그래프로 표현하며, 실제 수익률(Moving Average Return)과 목표 수익률(Moving Target Net Return)에 대한 이동 평균 값²⁷⁾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여 상호 비교하도록 하였다.

투자 리스크 수준은 표준화된 방법, 즉 투자기간 20년 동안 손실이 발생한 연도 수(횟수)로 측정하는데, 이는 2011년 7월 Financial Services Council과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 기준에 입각하여 상대적인 위험 수준을 7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손실발생횟수가 0.5회 미만이면 가장 낮은 수준(Level 1: 최저)이며, 6회 이상이면 가장 높은 수준(Level 7: 최고)으로 분류된다.

25) MySuper 상품만 선택하고, 연평균 적립금 수준이 \$50,000인 가입자를 의미함

26) 운영수수료, 세금, 자문비용 등을 차감한 것임

27) 이동평균 수익률은 10년 기하평균값으로 산출함

〈표 III-1〉 MySuper 상품의 표준화된 투자 리스크 수준

상대적인 수준	표준화 방법(20년 동안 손실 발생 횟수)
Level 1: 최저(Very Low)	0.5 미만
Level 2: 저(Low)	0.5~1 미만
Level 3: 중하(Low To Medium)	1~2 미만
Level 4: 중(Medium)	2~3 미만
Level 5: 중고(Medium To High)	3~4 미만
Level 6: 고(High)	4~6 미만
Level 7: 최고(Very High)	6 이상

자료: Australi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Reporting Standard SRS 700.0-Product Dashboard*

마지막 항목인 수수료와 기타 비용은 MySuper 상품 관련 투자, 운용 및 자문수수료를 의미한다.²⁸⁾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적립금 규모 \$50,000인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절대금액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MySuper 상품에 대한 공시 항목에서 자산배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MySuper 상품의 자산배분에 대한 정보는 대시보드 이외의 공간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MySuper 상품의 5가지 항목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연기금 웹사이트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대시보드 정보의 갱신 주기도 감독당국에서 정하고 있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이외의 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며, 당 회계연도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목표 수익률과 전년도 수익률 간 비교에 대한 정보도 실적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한다. 만약 FY2017(2017. 7. 1~2018. 6. 30) 수익률이 2018. 8. 8 확정되었다면, 연기금 수탁자는 2018. 8. 22까지 확정된 수익률을 공개해야 한다. 만일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8) 호주 정부는 금융제도자문위원회(FSI: Financial System Inquiry)를 통해 과거 10년(2004~2013년) 간 수수료 추이 및 인상·인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음(Rice Warner 2016). 이러한 노력은 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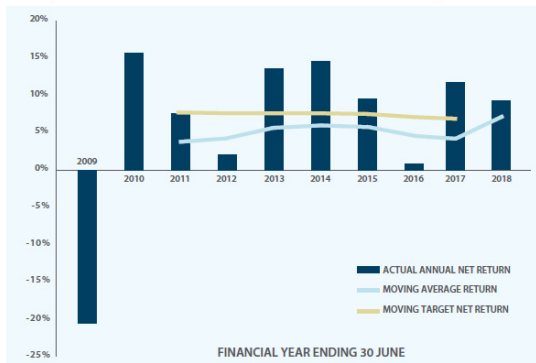
감독당국은 외부에 공개해야 할 5개 항목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하는 양식도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유리한 MySuper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림 III-2>와 <그림 III-3>은 서로 다른 연기금의 MySuper 상품에 대한 대시보드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감독당국의 표준 지침에 의거하여 핵심 정보를 단순하게 시각화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MySuper 상품 공시 사례 1(2018. 6. 30)

Return target¹

CPI plus 3.6% per year over a 10 year period.

Comparison between net return and return target²



Net return³ for the year ended 30 June

	Annual Net Return
2009	-20.74%
2010	15.90%
2011	7.50%
2012	1.87%
2013	13.74%
2014	14.50%
2015	9.50%
2016	0.57%
2017	11.23%
2018	8.82%
10 year average return to 30 June 2018	5.73% p.a.

Past performance is not a reliable indicator of future performance. Future performance is not guaranteed.

Level of investment risk

Medium to High⁴: Estimated number of negative annual net investment returns over a 20 year period is 3.9.

Statement of fees and other costs⁵

Employee and Employee Section C members	\$275
Personal and Partner Section members	\$325

- 주: 1) ANZ Australian Staff Superannuation Scheme의 MySuper 상품(혼합형 펀드)임
 2) MySuper 도입 이전(2012년) 수익률은 기존 디폴트 투자옵션을 의미함
 3) 막대 그래프는 연도별 실제 수익률, 위쪽 선 그래프는 실제 수익률의 이동평균, 아래 선 그래프는 목표 수익률의 이동평균값임
 4) 수수료 및 비용에는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https://secure.superfacts.com/web/IWfiles/attachments/Form/SA008_MySuperProductDashboard.pdf

〈그림 III-3〉 MySuper 상품 공시 사례 2(2017.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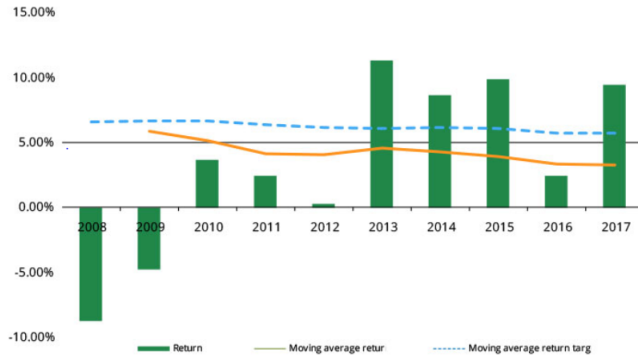
Return¹

10 year average return of 3.29% as at 30 June 2017.

Return target²

Return target for 2017-2026 of 3.5% per year above inflation, after fees and taxes.

Comparison between return target and return



Level of investment risk³

Medium to High

Negative returns are expected in 3.2 out of every 20 years.

Statement of fees and other costs⁴

\$622 per year

Fees and other costs for a representative member with a \$50,000 balance. This is the amount shown on page 12 of the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PDS)**.

주: 1) Australian Ethical Super의 MySuper 상품(혼합형 펀드)임

2) MySuper 도입 이전(2012년) 수익률은 기존 디폴트 투자옵션을 의미함

3) 막대 그래프는 연도별 실제 수익률, 점선 그래프는 목표 수익률의 이동평균값, 실선 그래프는 실제 수익률의 이동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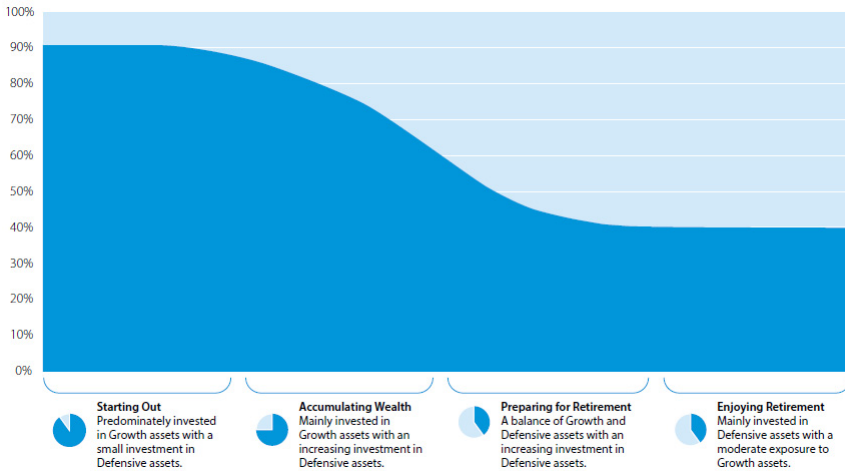
자료: <https://www.australianethical.com.au/super/product-dashboards/>

감독당국은 2015년부터 MySuper 상품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투자옵션(Choice Option)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 상품 대시보드 정보를 가입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4) MySuper 상품 예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ySuper 상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일 상품 내에서 적절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라이프 사이클 펀드, 목표만기 펀드, 혼합형 펀드(Balanced Fund) 등이 활용된다. <그림 III-4>는 ANZ 산하 연기금 수탁자(OnePath MasterFund)가 MySuper 상품으로 인가받은 라이프 사이클 펀드(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의 연령구간별 성장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립단계(ANZ Smart Choice Super)와 인출단계(ANZ Smart Choice Pension)를 통합한 펀드(One Fund For Life)로서 가입 초기 성장자산의 비중이 90% 수준에 달하나, 점차 은퇴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40%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림 III-4>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Glide Path 예시



주: 세로축은 적립금 중 성장자산에 투자되는 비중임

자료: ANZ(2018. 3), "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

<표 III-2>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 상품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펀드는 가입자가 출생한 시기(1940s, 1950s, ..., 1990s, 2000s)별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각 연령계층별로 자산배분 범위, 목표수익률, 위험수준 등이 상이하다. 목표수익률은 '소비자물가상

승률(CPI)+ α '로 설정하는데 연령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산배분 비율도 달라지는데, 표준적인 위험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표 III-2〉 라이프 사이클 펀드 상품 특성 예시

(단위: %, 년)

상품명	Life stage 1940s	Life stage 1950s	Life stage 1960s	Life stage 1970s	Life stage 1980s	Life stage 1990s
대상연령계층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자산배분 범위						
현금	10~45	3~39	0~29	0~25	0~22	0~22
국내채권	7~38	7~37	0~34	0~28	0~25	0~24
해외채권	0~28	0~28	0~30	0~27	0~25	0~24
대체투자	0~20	0~20	0~20	0~20	0~20	0~20
국내주식	0~29	1~32	5~46	12~52	15~55	16~56
해외주식	1~32	5~36	11~52	19~59	23~63	24~64
목표수익률	CPI+1.5	CPI+2.0	CPI+3.0	CPI+3.5	CPI+4.0	CPI+4.0
자산운용 수수료	적립금 대비 0.5%					
운용관리 수수료	연간 \$50 + 적립금 대비 0.08%					
매매 수수료	0.02	0.02	0.03	0.03	0.03	0.09
최저투자기간	10	10	10	10	10	10
위험수준*	4	5	6	6	6	6

주: 1) 대상연령계층 중 일부(예: Life stage 2000s)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2) * 위험수준(Standard Risk Measure)은 20년 동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횟수로 표준화하여 표현함
Level 4: 중위험(2~3회 미만), Level 5: 중~고위험(3~4회 미만), Level 6: 고위험(4~6회 미만)

자료: ANZ(2018. 3), "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

2018년 기준 20대인 1990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Life stage 1990s)에서는 목표수익률을 'CPI+4.0%'로 설정하고, 표준적인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배분(Level 6: 20년 동안 손실이 발생할 횟수 4~6회 미만)을 한다. 이에 비해 2018년 기준 70대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Life stage 1940s)는 목표수익률을 'CPI+1.5%'로 두고, 위험수

준이 중간(Level 4: 20년 투자기간 중 손실발생 횟수 2~3회 미만) 정도인 자산배분을 하게 된다.

만일 연기금 수탁위원회에서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MySuper 상품으로 지정하였다면, 가입자의 출생 시기(Stage)별로 목표 수익률, 수익률, 투자리스크, 수수료 및 비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모든 상품(1940s, 1950s,, 1990s, 2000s)에 대해 대시보드를 따로 작성해서 공시해야 한다.

5) 시장 규모

대부분의 연기금이 광범위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지만, 신규 가입자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MySuper 옵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표 III-3>은 2018. 6. 30 기준 MySuper 시장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3> MySuper 규모(2017. 6. 30)

구분	계좌 수 (천 개)	적립금 (\$Million)	계좌당 적립금(\$)	적립금 비중 (%)
MySuper(A)	15,447	571,056	36,969	100.0
가입자 선택(적극적)	1,585	59,105	37,290	10.4
가입자 미선택(소극적)	13,854	511,952	36,953	89.7
전체(B)	27,453	1,727,492	62,855	-
MySuper 비중(A/B, %)	56.3	33.1	58.8	-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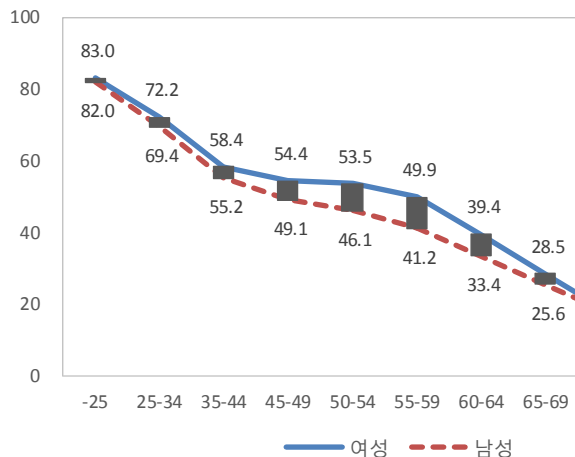
MySuper 투자옵션으로 112개²⁹⁾ 상품이 감독당국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 상품에 사용자 부담금을 투자한 계좌 수는 1천 5백만 개 이상으로 전체 계좌 대비 56.3%를 차지한다. MySuper 적립금 규모는 \$571billion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33.1%에 달한다. 계좌당 적립금은 \$36,969로 나타나 전체 평균의 58.8% 수준이다. 즉, 비교적 소액 계좌 중심으로 MySuper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MySuper 상품을

29) 기업형기금 15개, 산업형기금 43개, 공적기금 12개, 소매형기금 42개임

선택한 가입자 중 가입자 스스로 이 상품을 선택한 적극적 투자자 비중은 10.4%에 불과하고, 나머지 89.7%는 디폴트 상품에 대한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소극적 투자자로 볼 수 있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MySuper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연령계층 및 성별로 비교하면 <그림 III-5>와 같다. 연령별로 보면, 투자경험이 많지 않고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20~30대 보유율이 높고, 성별로 보면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대체적으로 35세 미만 젊은 여성 중심으로 MySuper 상품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5> 연령계층별·성별 MySuper 보유 현황(2017. 6. 30)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에서 저자 작성

6) 수수료 변화

호주 정부가 MySuper 상품을 도입한 목적 중 하나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함으로써 가입자의 순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연기금 간 자산배분, 자산모델, 보험상품 제공, 기타 가입자 서비스(운영 플랫폼) 등의 차이로 인해 수수료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표 III-4〉는 APRA 감독을 받는 118개 디폴트 투자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MySuper 도입 전(2011년)과 도입 후(2014년)로 구분하여 연기금별로 비교한 것이다. 감독당국은 가입자가 MySuper 상품의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선택행동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립금 수준을 3개(\$5,000/\$20,000/\$50,000)로 구분해서 금액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III-4〉 MySuper 상품 수수료 변화(2011 vs. 2014)

구분		1인당 정액 (\$)	적립금 대비 (%)	가입자 적립금 규모당(\$)		
				\$5,000	\$20,000	\$50,000
MySuper 도입 전 (2011)	기업형기금	47	0.62	77	170	355
	소매형기금	64	1.61	144	385	867
	산업형기금	68	0.76	106	220	449
	공적부문	28	0.58	57	144	317
	전체	63	0.92	109	248	525
MySuper 도입 후 (2014)	기업형기금	89	0.77	127	242	473
	소매형기금	72	0.96	120	263	551
	산업형기금	73	0.78	112	229	464
	공적부문	34	0.84	76	202	454
	전체	70	0.80	108	222	450

자료: Rice Warner(2014), "MySuper Fees"

디폴트 투자옵션이 MySuper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2014년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 수준은 모든 연기금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아졌다(연기금 평균 2011년: 0.92% → 2014년: 0.80%). 그러나 가입자 1인당 정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수료³⁰⁾ 수준은 모든 연기금에서 상승하였다(연기금 평균 2011년: \$63 → 2014년: \$70).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정도는 연기금 유형별로 달리 나타났다.

MySuper 상품 도입은 수수료 축소에 대한 압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었던 소매형기금의 이익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³¹⁾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전보다 수

30) 준법감시비용, 상품설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임

수료 수준(연 1% 미만)을 크게 낮추었으나, 여전히 소매형기금의 수수료가 기업형기금보다 더 높다. 소매형기금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 수준은 MySuper 도입 전 1.16%에서 도입 후 0.96%로 낮아졌는데, 이는 자산배분 변경, 상품 이익 축소 및 자문 서비스 제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Rice Warner 2014).

한편, 적립금 규모별로 MySuper 도입 효과를 보면,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 하락(\$5,000: -0.9%, \$20,000: -11.7%, \$50,000: -14.3%)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디폴트 보험

가. 개관

1) 계약 형태

앞서 디폴트 투자옵션인 MySuper 상품 설계 시 표준 수준의 보장금액을 제공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즉, 기금형(산업형, 소매형, 공공부문, 기업형)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연기금에서 MySuper 상품을 인가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디폴트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계약 형태는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며 연기금 소속 가입자가 보험수익자이다.³²⁾ 계약자인 수탁자가 일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가입자 계좌에서 월 단위로 공제한 후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주체가 된다.

디폴트 보험은 가입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가입이 배제되는 옵트

31) 만약 높은 수익률로 고비용이 상쇄될 수 있다면 높은 비용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나, 수수료가 가장 높은 소매형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짐

32) 단체보험시장에 참여하는 원수보험사는 20여 개 수준이며, 총자산 기준 상위 3사(AMP, MLC, OnePath)의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함. 은행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매형기금의 경우 생명보험 자회사로부터 상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형기금이나 공적부문의 경우 외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상품을 조달함. 대형 공적연기금인 QSuper는 2016년 자신의 연기금 소속 가입자에게 생명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QInsure)를 설립함

아웃(Opt-Out) 방식이다. 옵트 인(Opt-In)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엄격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보험료 측면의 경쟁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가입자들이 무관심하거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가입을 미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탁자를 계약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이 종료³³⁾되거나 여타 사유로 효력이 중지되었을 경우 가입자가 보장을 원한다면, 보험회사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가 속한 연기금을 옮길 경우 보험회사가 이전을 승인하면, 보험계약의 이전도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을 떠날 경우에도 기존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전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단체보험 요율에 비해 높은 개인보험 요율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2) 상품 유형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디폴트 보험은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TPD: Total Permanent Disability)이며, 보험료는 세전 소득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자동 공제(세율: 15%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세후 소득을 활용해야 하는 개인별 가입(세율: 0~45% 적용³⁴⁾)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다.

사망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영구장해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되었을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³⁵⁾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모기지 상환, 의료비용 충당, 부양가족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영구장해보험은 사망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되거나,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기금에 따라서는 사망보험 가입을 전제로 영구

33) 적립단계에서 인출단계로 이행하여 분할인출계좌(Pension Account) 개설 시 가입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사망보장도 승계됨

34) 4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18만 초과임

35) 일부 연기금에서는 장해기간 동안(예: 5년) 분할 지급하기도 함

장해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급부 측면에서도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이 연계되어 있어 사망보험금 지급 전에 영구장해보험금이 먼저 지급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감소된다. 따라서, 영구장해보험금 수령 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영구장해보험 가입금액보다 더 많게 설계해야 한다.

감독당국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연기금에서는 소득보상보험(IP: Income Protection)도 디폴트 보험으로 제공하는데, 보장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 상품으로 구분된다. 장기소득보상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예: 75%)을 계약에서 정한 기간(예: 근로 복귀, 65세) 동안 매월 지급한다. 단기소득보상보험은 급여 지급 기간이 보통 2년 정도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의 성·연령·직업·흡연 여부 등 제반 위험률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소득보상보험은 대기기간(30일, 60일, 90일)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손 방식(예: 임금소득의 75%)이 적용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타 연기금의 소득보상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된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소득보상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사용자 부담금에서 차감되는 보험료 규모가 클수록 투자 목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축소되어 적립금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보험금으로 보장할 현재 소득이 없는 가입자(예: 단기실직자, 육아휴직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디폴트 보험 시장 현황

1) 가입률

〈표 III-5〉는 2016. 6. 30 기준 MySuper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폴트 보험 보유 여부를 파악한 것이다. 전체 MuSuper 계좌 수는 14.9백만 개이며 사망보험에 가입한 계좌 수는 75.8%인 11.3백만 개다. 물론 MySuper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

망보험 가입자 수는 11.3백만 명을 하회할 수 있다. MySuper 계좌 수 대비 영구장해보험과 소득보상보험 보유 계좌 수는 각각 67.8%, 28.2%이다. 디폴트 사망보험에 대해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가입자가 30% 미만으로 추정되어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 MySuper 보유자의 디폴트 보험 가입(2016. 6. 30)

구분		계좌 수 (백만 개)	취업자 대비 비중 (%)	MySuper 대비 비중 (%)
MySuper 계좌		14.9	93.7	100.0
디폴트 보험 가입	사망보험	11.3	71.1	75.8
	영구장해보험	10.1	63.5	67.8
	소득보상보험	4.2	26.4	28.2
15~64세 취업자		15.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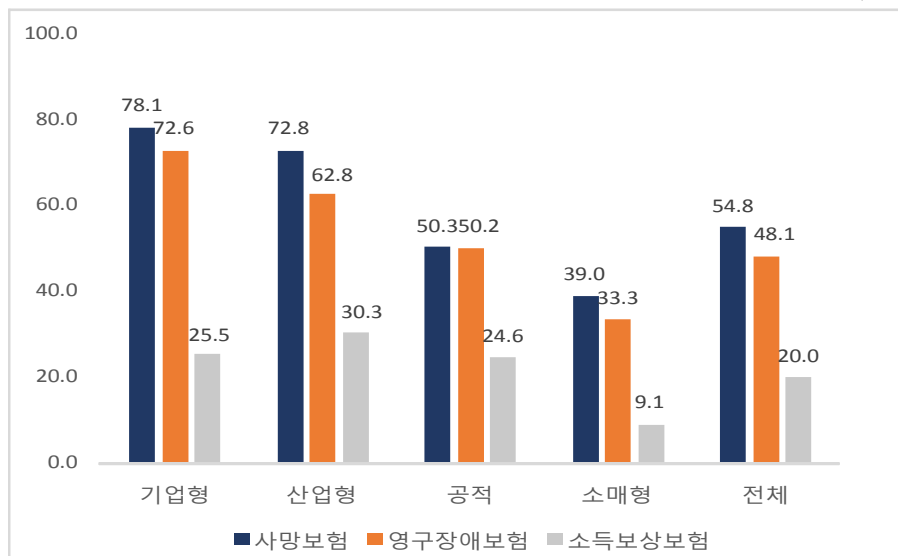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그림 III-6〉은 2017. 6. 30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계좌의 보험 가입률을 연기금 간 비교한 것이다. 전체 퇴직연금 계좌 대비 보험가입률은 사망보험 54.8%, 영구장해보험 48.1%, 소득보상보험 20.0%로 나타났다. 이는 〈표 III-5〉에서 살펴본 MySuper 보유자의 보험가입률보다 20%p 정도 낮은 수치이다. MySuper 가입자의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디폴트 투자 상품의 인가요건에서 디폴트 보험상품을 적용제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연기금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업형기금(사망보험: 78.1%, 영구장해보험: 72.6%, 소득보상보험: 25.5%)의 보험가입률이 가장 높고, 소매형기금(사망보험: 39.0%, 영구장해보험: 33.0%, 소득보상보험: 9.1%)이 가장 낮다.

〈그림 III-6〉 호주 연기금별 보험 가입률(2017. 6. 30)

(단위: %)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에서 저자 작성

2) 성장률

호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전체 생명보험시장보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단체보험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표 III-6〉은 생명보험 전체 시장의 성장률과 단체보험 시장의 성장률을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2003~2012년에는 단체보험 성장률이 전체 시장 성장률 대비 1.3배(단체보험: 16% vs. 전체: 12%) 높았으나 2013~2016년에는 1.7배(단체보험: 12% vs. 전체: 7%)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표 III-6〉 호주 생명보험 계약고 성장률

(단위: %)

구분	2003~2012년	2013~2016년
단체보험	16	12
전체	12	7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단체보험 방식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이점이 존재한다. 퇴직연금기금을 통해 보험료 납입 시 한계세율보다 낮은 15% 세율만 부담하지만, 개인이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구입할 경우 한계세율(0~45%)이 적용된 세후 소득을 활용해서 가입하게 되므로 부담이 더 크다.

3) 보장수준

〈표 III-7〉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주 퇴직연금기금의 디폴트 보험을 통해 지급한 보험금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고, 총 지급액 규모는 \$138억,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67,300 수준이다(KPMG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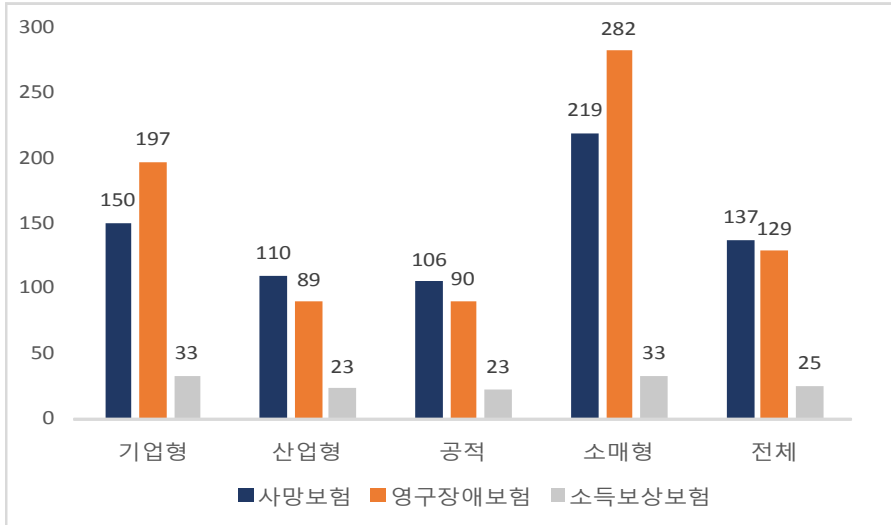
〈표 III-7〉 호주 디폴트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2013~2015년)

구분	지급 건수 (건)	총 지급 금액 (\$ Million)	건당 지급 금액 (\$ 1,000)
사망보험	53,298	6,644	125
영구장해보험	48,937	5,045	103
소득보상보험	102,538	2,092	20
전체	204,773	13,781	67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그림 III-7〉은 FY2016 기준 연금별 지급한 건당 보험금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소매형기금은 보험가입률은 가장 낮지만, 건당 보험금 지급액(사망보험: \$219,109, 영구장해보험: \$282,417, 소득보상보험: \$33,131)은 가장 높다. 전체 연금 평균 건당 보험금 지급 금액은 사망보험 \$137,198, 영구장해보험 \$128,881, 소득보상보험 \$25,240으로 산출되었다(APRA 2018).

〈그림 III-7〉 호주 연기금별 건당 보험금 지급액
(2016. 7. 1~2017. 6. 30, \$1,000)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에서 저자 작성

퇴직연기금기금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가입자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활용되므로 이들이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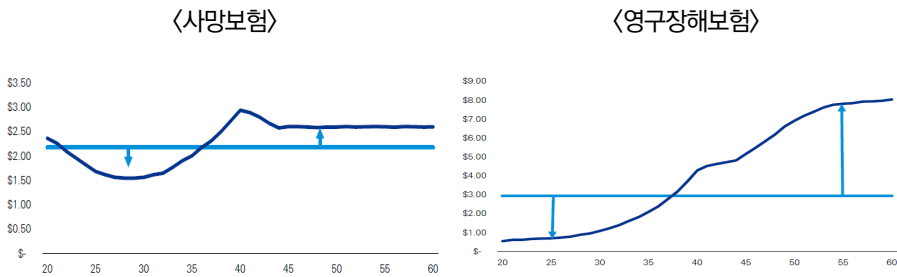
다. 보험요율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를 적용한다. 소매형기금과 회사형기금 그 중에서도 특히 소매형기금은 디폴트 보험상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 외부에서 보험요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및 공적기금의 단체보험요율 적용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이들 연기금 수탁자는 성별, 연령별 단일률을 적용하거나, 생산직과 사무직 간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높다. 단일률 적용을 통해 위험이 다른 집단 간 상호보조 즉,

여성이 남성을, 젊은층이 장년층을, 사무직이 생산직을 보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III-8>은 연령별 위험률을 적용한 보험료와 단일률을 적용한 보험료 수준을 연령별로 비교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위험률이 낮은 40세 미만 계층이 위험률이 높은 40대 이후 계층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8〉 디폴트 보험 보험요율 적용



주: 1) 가로 축은 연령, 세로 축은 주당 보험료를 나타냄.

2) 직선 그래프는 단일률(Unit-Rate Premium) 적용 시 보험료이며, 곡선 그래프는 연령별 위험률(Age-Rated Premium) 적용 시 보험료를 나타냄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금융회사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소매형기금에서는 위험집단을 구분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에서는 영구장해보험의 경우 위험률이 높은 집단(비표준체)은 그렇지 않은 집단(표준체)에 비해 1.5배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표 III-8〉 소매형기금 직종 위험도 차등 사례

(단위: 배)

구분	사망 요인	영구장해 요인
표준체 ¹⁾	1	1
비표준체 ²⁾	1	1.5

주: 1) 표준체는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가입자를 의미함

2) 비표준체는 근무시간의 80% 미만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가입자를 의미함

자료: ANZ(2018. 3), *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

위 사례에서 만약 가입자가 표준형 보장이 아닌 맞춤형 보장을 선택하였다면, 직종이 3개 그룹(사무직, 표준채, 단순노무직)으로 세분화되며, 보험요율도 그룹별(사망보험: 1~1.7배, 영구장해보험: 1~3.4배)로 확대된다.

연기금 선택제도에 따라 가입자가 연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 선택한 연기금에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이전을 승인하면 기존 보험계약도 이전시킬 수 있다.

라. 찬반논쟁

호주에서는 디폴트 방식으로 단체보험을 제공할 경우 투자재원이 축소되어 은퇴소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개인별 위험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위험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위험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더 크게 축소된다.

〈표 III-9〉는 KPMG(2017)가 조사한 12개 연기금의 MySuper 상품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으로 인해 축소되는 적립금 수준(보험 제공 전·후 적립금)을 추정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험료 공제로 인해 적립금은 6.2% 감소하지만, 그 효과는 계층별로 상이하다. 특히 저임금 계층(\$18,200 미만: -16.0% vs. \$87,000 초과: -3.0%)의 경우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보험료를 정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표 III-9〉 디폴트 보험료 공제로 인한 적립금 감소 효과

(단위: %)

구분	구분	효과	구분	효과
성별	여성	7.6	남성	5.2
연령	30세 미만	7.0	45~65세	4.0
소득	\$18,200 미만	16.0	\$87,000 초과	3.0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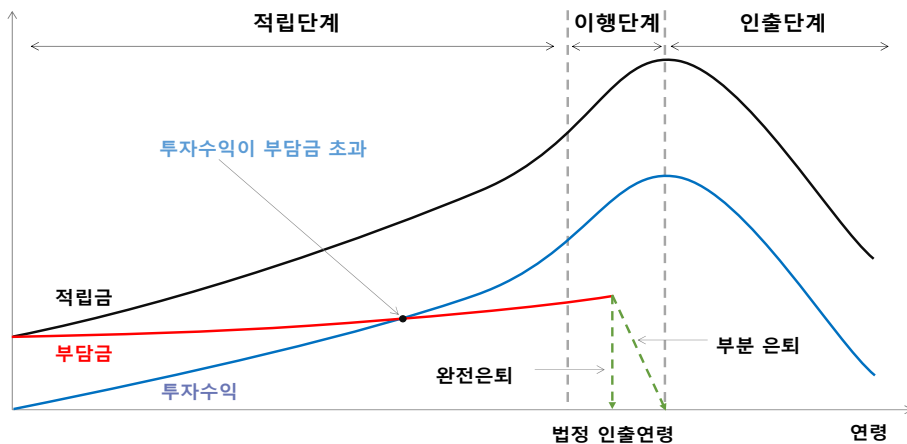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보험가입은 호주의 보장부족(Underinsurance)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Clare·Ross 2017). 호주퇴직연금기금협회(ASFA: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가 지난 40년 동안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25% 정도가 단기 소득보상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5%는 영구 소득보상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사망보험금이나 영구장해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 비중도 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입자의 위험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인출상품

가. 이행단계

〈그림 III-9〉는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국면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소득-소비 평준화를 위해 적립-이행-인출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III-9〉 호주 퇴직연금제도 국면 구성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적립단계는 노후재원을 축적하는 단계로서 사용자 부담금 의무화, 적립금에 대한 중도인출 금지,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디폴트 방식 등으로 요약된다.

이행단계(TTR: Transition To Retirement)는 개별 가입자가 은퇴시점을 향해 점진적으로 이행해 가는 시기를 의미한다. 적립단계와 인출단계를 매개하는 국면이지만 개인별로 은퇴시점이 각기 다르므로 특정한 연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립단계와 인출단계 사이에 이행단계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기금에서 이를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한다. 이행단계를 두는 것은 개인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립단계에서 인출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은퇴를 할 경우에는 이행단계 없이 적립단계에서 인출단계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인출단계는 은퇴 후 적립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국면으로 가입자가 특정 조건(예: 법정 최저인출연령 도달과 은퇴, 법정 최저인출연령 도달과 이행단계 진입, 65세 이후)을 충족시켰을 경우 인출할 수 있다.

나. 법정 최저인출연령

호주 정부는 미국의 401(k) 제도와 유사하게 법정 최저인출연령(Preservation Age)을 정하고 있다.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인출연령은 1960. 7. 1 이전 출생자는 55세이나, 이후 매년 1세씩 늦춰져 1964. 7. 1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60세를 적용하였다.

법으로 정한 최저인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적립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재직기간 동안 중도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별 연기금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로서 경제적 곤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이경희 2017). 연방정부의 소득지원(Commonwealth Government Income Support)과 26주 이상 실업급여로도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야 한다.

〈표 III-10〉 호주 법정 최저인출연령

(단위: 세)

출생 연도	법정 최저인출연령
1960. 7. 1 이전	55
1960. 7. 1~1961. 6. 30	56
1961. 7. 1~1962. 6. 30	57
1962. 7. 1~1963. 6. 30	58
1963. 7. 1~1964. 6. 30	59
1964. 7. 1 이후	60

자료: Superannuation Industry Regulation 1994,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reg/sir1994582/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는 주택압류, 의료비, 장례비,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장애로 인한 주택·차량개조 비용 발생 등이다. 이 밖에 중병, 영구 국외이주, 영구장해, 일시장해,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호주에서는 연기금에서 디폴트 방식으로 제공하는 보장성보험을 통해 긴급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입자가 영구장해나 일시장해 상태가 되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보험으로 가입한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중도인출이 억제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완전은퇴 시점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다. 인출옵션

1) 과세 및 인출방식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인출옵션은 적립단계의 연기금에서 제공하거나, 타 연기금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³⁶⁾ 적립단계와 달리 인출단계에서는 아직 디폴트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의 인출옵션은 크게 일시금 인출과 계좌분할인출 방식으로 대별된다.

36)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함

계좌분할인출방식은 인출계좌(Pension Account)에 적립금을 두고 일정 기준에 입각하여 분할 인출하는 방식(이하 ‘계좌인출 방식’이라 함)이다.

〈표 III-11〉은 인출옵션별 과세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법정 최저인출연령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전액 22% 과세한다. 반면, 60세 이후 인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인출하면, 일시금과 계좌인출방식 모두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표 III-11〉 호주 인출옵션별 과세

구분	일시금	계좌인출 방식
법정 최저인출연령 이전	전액 22%	-
법정 최저인출연령~59세	최저한도 이하: 0%	비과세 부문: 0%
	최저한도 초과: 17%	과세 부문: 개인소득세율
60세 이후	비과세	비과세

주: 1) 최저한도는 2017. 6. 30 기준, \$200,000 수준임

2) 세율은 Medicare Levy 2%를 포함한 것임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에서 저자 작성

계좌인출방식은 세제혜택을 향유하면서 적립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적립단계의 투자전략을 모두 구사할 수 있어 매우 유연하다. 2006년 이전까지의 계좌인출방식은 Account Based Pension이었으나 2007년 이후 Allocated Pension으로 변경되었다. 과세혜택 조건으로 전자는 최저와 최고한도 내 인출을 요구하는 데 비해 후자는 최저한도 규정만 두고 있다.

〈표 III-12〉는 Account Based 방식에서 규정한 연령계층별 최저 인출한도 수준이다. 법정 최저인출연령인 55~60세부터 65세 미만 가입자는 최저 4% 이상 인출해야 하고, 95세 이상 가입자는 14% 이상 인출해야 한다.

〈표 III-12〉 계좌인출(Allocated) 방식의 최저인출수준

(단위: %)

법정 최저 인출 연령~ 65세 미만	65~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세 이상
4	5	6	7	9	11	14

자료: Vanguard(2017. 6),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최저인출 규정은 계좌의 실질투자수익률을 연 2~4%로 가정한 상태에서 호주 은퇴자의 기대여명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계좌인출방식에서 최대 인출 한도를 폐지한 것은 은퇴자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행동해서 최저 인출률 수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자의 생활수준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제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2) 활용

〈표 III-13〉은 2017. 6. 30 기준 인출방식별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계좌 수 기준으로 보면, 계좌인출방식이 74.5%(Account based: 39.4%, Allocated: 35.1%)이며, 이 행연금(TRP: Transition to Retirement Pension) 10.1%, 기타 8.9%, 종신연금 6.5% 순이다.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계좌인출방식이 종신연금에 비해 높지만, 계좌당 평균적인 인출금액은 종신연금이 계좌인출방식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다. 이는 종신연금이 소비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출옵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과 달리 호주의 종신연금시장은 발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적립단계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장수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종신연금 상품의 단점³⁷⁾으로 활용도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37) 자산에 대한 통제력이 낮고,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유연성이 낮음

〈표 III-13〉 호주 인출옵션 활용 현황(2017. 6. 30)

구분	계좌 수 (천 개)		계좌당 적립금 (\$)	계좌당 인출금 (\$)
		비중(%)		
계좌인출방식	1,198	74.5	271,779	19,579
Account based ¹⁾	634	39.4	279,374	17,816
Allocated ²⁾	564	35.1	263,242	21,561
종신연금	105	6.5	154,036	40,141
기타	143	8.9	262,591	23,877
이행연금(TRP) ³⁾	162	10.1	208,610	13,608
전체	1,608	100.0	256,906	20,703

주: 1) Account Based Pension은 주로 산업형기금, 소매형기금 및 자기관리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대 여명을 감안하여 인출 수준의 최저와 최고한도 내에서 인출함

2) Allocated Pension은 인출 최저 수준만 규정함

3) TRP: Transition to Retirement Pension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에서 저자 작성

라. 디폴트 인출방식 검토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1992년에 의무화되었으며, 도입 당시 부담률이 3%에 불과하여 인출단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사용자 부담금이 9%인 가입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시기는 2030년 중반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전체 노후소득 중 기초연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퇴직연금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은퇴소득 창출 방법과 장수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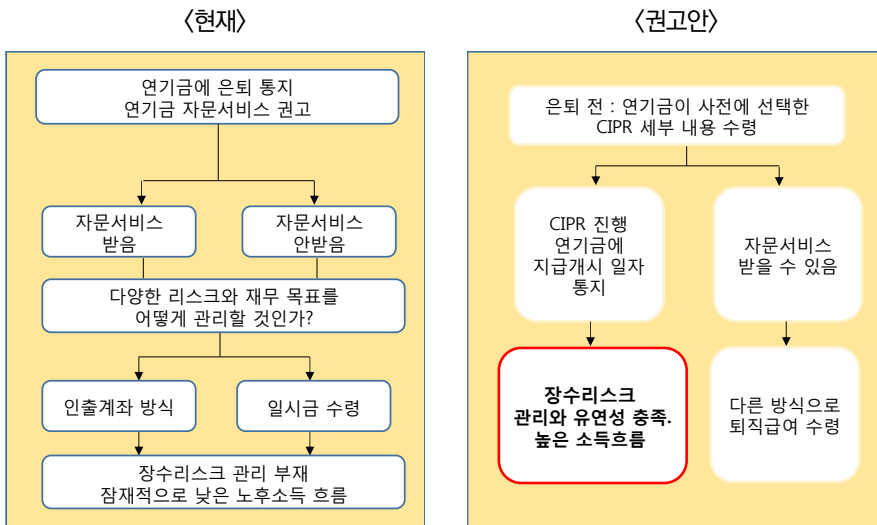
1) 인출단계 의사결정 체계

2014년 말 Financial System Inquiry(Murray Review)에서는 인출단계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그림 III-10〉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는 은

38) 호주에서 인출단계는 적립단계에 비해 덜 발달한 시장이며,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2017에서도 호주 연금시스템의 개선사항으로서 적립금의 소득흐름방식 지급을 제안함

퇴자가 연기금에 은퇴 사실을 통지하고 연기금에서 권고하는 자문서비스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에서는 가입자가 은퇴하기 전에 연기금에서 사전에 선택한 인출상품(CIP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의 세부 내용을 알려 주도록 한다.

〈그림 III-10〉 Murray Review 인출단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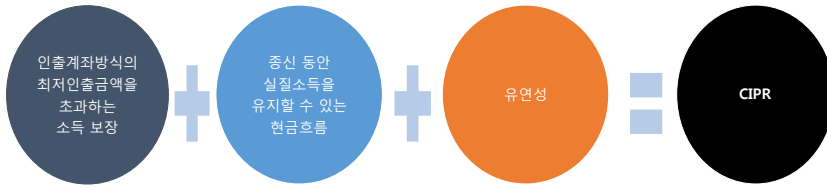


주: CIP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
자료: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 Report(2014. 11)

2) 인출상품 요건

호주 정부가 Murray Review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인출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 12. 15 호주 정부는 인출상품(CIPR 또는 MyRetirement)의 기본체계를 갖추기 위해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종합적인 인출상품(CIPR)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저요건으로 세 가지를 명시하였다. 첫째, 기존 계좌인출방식의 최저인출수준보다 더 높은 추가소득을 보장할 것, 둘째, 종신토록 실질소득을 제공하여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 셋째, 일시금 수요나 상속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할 것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1〉 인출상품(CIPR) 최저 요건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6. 12. 15),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s for Retirement", Discussi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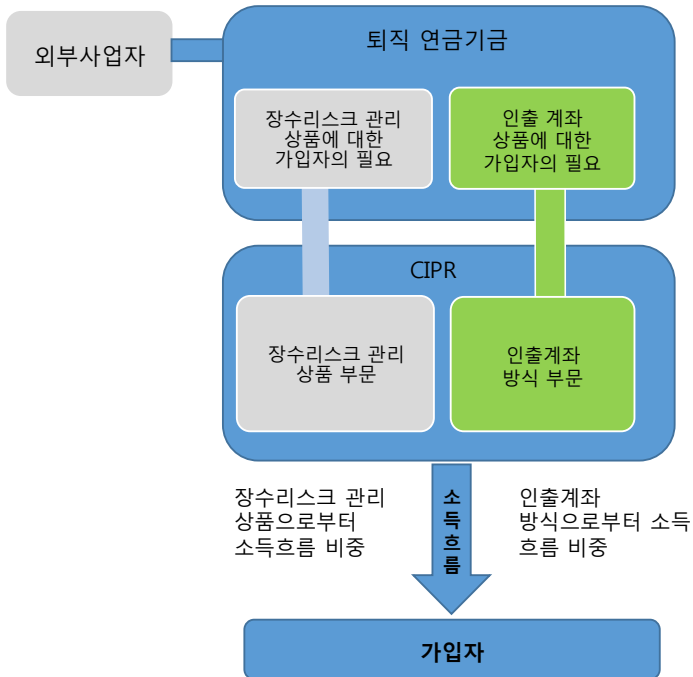
호주 정부가 인출상품의 최저 요건으로 종신 동안 실질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명시한 것은 장수리스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계좌인출방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은퇴소득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Financial System Inquiry 2014).

인출상품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는 가입자의 전반적인 소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은퇴상품(CIPR)으로부터 단일 소득흐름을 수령하지만, 상품구성은 장수리스크 관리 부문과 계좌인출방식 부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총 57개 전문가 단체가 인출상품(CIPR)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취합하여 2017. 7. 1부터 인출국면의 투자수익 비과세 상품 범주를 기존 상품(종신연금, 인출계좌 방식)에서 장수리스크 관리 기능이 있는 기타 연금상품(Group Self-Annuitisation,³⁹⁾ Deferred Life Annuities)으로 확대하였다.

39) 구성 단체 가입자의 사망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상품임

〈그림 III-12〉 인출상품(CIPR) 개념도 사례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6. 12. 15),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s for Retirement", Discussion Paper

IV. 시사점 및 맺음말

여기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 퇴직연금시장의 성공요인은 정부 주도로 부담금 납입을 의무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인구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중심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 8.3% 수준은 국민연금 9%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상한(2017. 7. 1~2018. 6. 30: 449만 원⁴⁰)이 존재하는 데 비해 퇴직연금은 소득상한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의 기능이 국민연금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역할 구현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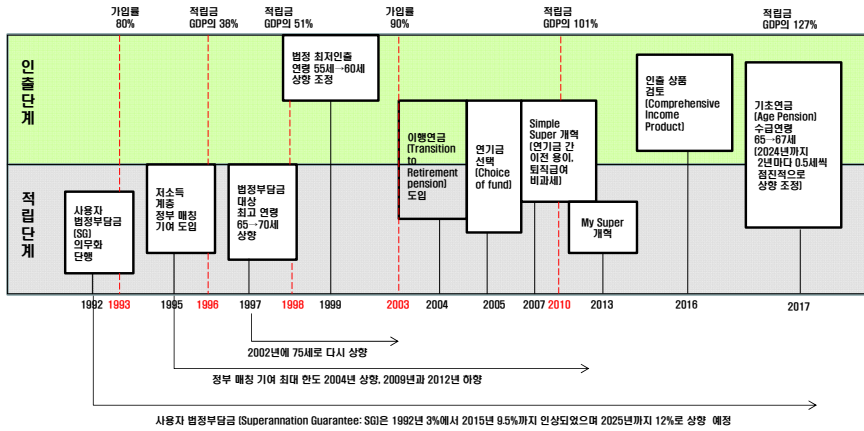
1. 정책 목표

호주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높은 저축률, 낮은 비용, 그리고 높은 가입률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다.

〈그림 IV-1〉은 호주 정부가 최초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한 1992년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과 시장성과(가입률, GDP 대비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7년 기준 GDP의 127%에 달하며 취업자의 가입률도 94%를 넘어섰다.

40)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449만 원보다 많으면 44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그림 IV-1〉 호주 정부의 퇴직연금정책 추진 개요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5),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에서 저자 수정 작성

호주 정부가 1992년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시킨 목적 중 하나는 장래 인구 고령화⁴¹⁾에 대비하여 정부의 예산(기초연금) 압박을 줄이는 것이었다. 고령화로 과세기반 인구가 축소되면 공적건강 및 기초연금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자조기능이 강조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공식 목표를 '기초연금을 대체하고 보완하여 적절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지속하였고, 이것이 현재와 같은 발전의 원동력임을 시사한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충실화를 위해 사용자 부담금을 속도감 있게 인상(1992년: 3% → 2025년: 12%)했으며 부담금 납부 유형도 다양화(사용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정부 보조금, 배우자 부담금 등)하였다.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 이후 5년(1999년)에 부담금과 투자수익을 법정 인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중도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정책은 높이 평가된다.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은퇴시점까지 적립금이 퇴직연금제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

41) 호주 정부는 2010년부터 2050년까지 65세에서 8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2배가 될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Australian Government 2010, 2015)

절히 조치함으로써 노후소득원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 계좌에 이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전 이후 일시금 인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은퇴 이전에 중도 유출되고 있다.⁴²⁾ 퇴직시점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최종 은퇴시점에 잔존하는 적립금은 소액이어서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킬 유인이 없다.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데 있다면 호주의 사례와 같이 IRP 계좌 이전 후 원칙적으로 법정인출연령(예: 60세)까지 중도해지를 제한해야 한다.

2. 디폴트 옵션 설계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는 확정기여형이지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디폴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가입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관심이 매우 낮아서 극도로 수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가입자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적인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여 전문가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낮은 비용을 부과하며 전문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42) 2017년 상반기 IRP 이전자는 43만 5천 명이나 해지자가 39만 1천 명이며, IRP 이전금액은 6조 5천억 원이나 해지금액은 5조 6천억 원임(통계청 보도자료(2018. 4. 26),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IRP 계좌로 이전은 하지만 이전금액의 대부분이 다시 일시금으로 인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가. 디폴트 투자 옵션

호주 정부가 2013년 도입한 MySuper 상품은 신중하게 잘 설계된 디폴트 투자 옵션의 성공사례로 회자된다. 호주 정부가 2005년 단행한 가입자의 연기금 선택 정책은 도입취지와 달리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개인이 통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위험선호도와 노후소득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연기금 간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호주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200여 개 이상 존재하므로 공급자 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경쟁적인 시장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점유율 5% 이상인 연기금도 없고, 상위 20개 연기금의 시장점유율은 40%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준다.

여기에 착안하여 호주 정부는 직접적으로 디폴트 투자옵션(MySuper)의 요건을 지정하였다. 즉, 디폴트 투자상품을 통해 수동적인 개인이 퇴직연금자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쟁 촉진과 가입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감독당국이 사전에 디폴트 투자상품의 요건을 단순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인가권을 행사하였으며, 공시기준도 통일시킴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감독당국은 연기금 수탁자가 사용자에게 따라 가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사업체(높은 적립금 규모 보유)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소규모 사업체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MySuper 상품에서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수준을 달리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디폴트 정책으로 연기금에서는 비용절감과 연금자산에 부합하는 단일 상품(예: 라이프 사이클 펀드)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가입자의 선택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선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투자상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전에 잘 설계된 몇 개의 상품만 선

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폴트 상품의 경우 투자전문가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고 리밸런싱되는 장치가 필요하며,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금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젊은 계층에서 위험자산을 편입한 후 은퇴에 가까워짐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디폴트 상품을 운영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저성장·저금리 지속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디폴트 보험

국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생명보험상품을 연계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호주는 디폴트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국가이다.⁴³⁾ 호주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생명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사망이나 영구장해) 시점부터 은퇴연령까지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호주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보험상품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낮아서 보험료가 저렴하다.⁴⁴⁾
- 사용자 부담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개인의 현금흐름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 표준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언더라이팅 없이 가입할 수 있다.
- 개인별 니즈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43) KPMG(2017)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7개국 중 캐나다와 칠레에서만 디폴트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호주와 달리 옵션 아웃 옵션이 없고 급여구조도 상이함

44) 30~60세 여성이 보험료는 25~55% 정도 저렴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됨. 동일 연령 남성의 경우에도 35~60% 정도 저렴함. KPMG(2017) 분석에 의하면, 단체보험의 영업보험료 구성은 보험금 지급 80%, 사업비 12%, 이익 8%인 데 비해 개인보험은 보험금 지급 50%, 사업비 40%, 이익 10%로 단체보험의 사업비 비중이 훨씬 낮아 비용 효율성이 높음

일찍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았던 일본 제일생명(Dai-ichi Life)은 호주 퇴직연금제도 내 단체보험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였다. 일본 국내시장이 저출산·고령화로 사망보장 수요가 감소하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호주의 보장성보험시장에 주목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단체생명보험 부문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2008년 Tower Australia와 업무제휴(지분 29.7%)를 체결하였다. 동사는 제휴 당시 시장점유율 4위였으나, 2013년 1위로 성장하였고, 제일생명은 완전 자회사로 전환(2011년)시키고 회사 이름을 TAL로 변경하였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들도 퇴직연금제도와 연계하여 단체보장보험 시장의 발전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인출상품 개발

은퇴자 입장에서 재무 니즈는 현재 소비를 위한 소득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것과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수익을 창출하여 적립금이 생존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호주는 근로기간 중 중도인출은 법정 최저인출연령 규제를 통해 금지하였지만, 정작 은퇴시점의 인출방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종신토록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⁴⁵⁾에 따라 기초연금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들이 조기에 자금을 소진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출상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⁴⁶⁾

계좌인출방식은 유연하나 장수리스크 관리 기능이 미흡하며, 종신편급은 장수리스크 관리 기능은 있으나, 유연성이 부족하여 은퇴자의 선호도가 낮다. 이에 인출옵션 간

45) 호주 정부(2015)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기대수명(0세 출생자)은 남자 91.3세, 여자 93.6세이며, 60세 기대여명은 남자 26.4년, 여자 29.1년, 70세 기대여명은 남자 16.9년, 여자 19.3년임

46) 법정 최저인출연령은 55세이고,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65세이므로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립금을 조기에 소진할 경우 자산조사를 통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은퇴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호주 정부는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투자상품(Choice Superannuation)에 비해 디폴트 투자상품(MySuper)의 성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 인출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디폴트 상품(Soft Default)을 고려하고 있다. 즉, 적립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출단계에서도 연기금 수탁자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출상품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미진하다. 가까운 장래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이므로 인출상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호주에서 디폴트 인출상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CIPR과 같이 유연성과 장수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최저 요건을 충족한 인출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세가 더딘 것은 부분적으로 가입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계약형 지배구조와도 관련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확정급여형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확정기여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 금융감독원⁴⁷⁾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입자 행태 변화와 사업자의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수수료 산정체계의 합리화,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호주시장의 경험과 연관된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18),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첫째, 확정기여형제도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확정기여형제도를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호주의 사례는 개인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제도에 대한 통제력은 높지 않은 확정기여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도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재 계약형제도하에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제도설계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형에서도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⁴⁸⁾

둘째, 정책당국에서 디폴트 투자 옵션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상세히 제시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및 가입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연기금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디폴트 투자옵션이 가입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감독당국이 디폴트 투자옵션 요건을 제시한 후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품만 인가하였다. 그 결과, 수수료를 낮추고 가입자의 선택 부담을 경감시키는 순기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 부담금을 수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반드시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상품을 제공한 경우 발생한 가입자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 디폴트 투자상품의 순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품 간 비교 가능하도록 투명한 공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공시 항목을 핵심 성과(예: 목표수익률, 실제 수익률, 표준화된 투자리스크, 수수료)로 집약하고, 수수료는 특정 적립금 수준(예: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 대비 금액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간 동일한 양식(표, 그래프)으로 공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48) 영국의 경우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 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s)를 설치하도록 하였음(남재우 2017)

셋째,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일정 수준의 위험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단체보험(사망, 영구장해, 소득보상)을 제공하는 호주 사례는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연금금 수탁자가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적립기간 중 긴급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중도인출에 대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국내에서도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 시 이런 디폴트 보험상품을 활용한다면,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중도인출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성과를 고찰하고 발전 요인을 규명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퇴직연금기금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시장참여자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준공적연금제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문일(2001),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분석: 퇴직금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 김병덕(2017),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김원식(2014), 「노후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의 발전방향: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연구』, 4(2)
- 남재우(2017),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 『금융감독연구』, 4(2)
- 류건식·강성호(2017. 8. 14), 「한국과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연금정책 평가」, 『KIRI 고령화 리뷰』, 제12호
- 류건식·이상우(2013. 2. 12),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220호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금융투자협회(2010), 『호주 퇴직연금의 성공신화』
- 이경희(2017),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제와 인출행동 분석」, 『연금연구』, 7(2)
- 전성주·조영현(2016. 4. 11),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 도입 및 시사점」, 『KIRI 리포트』, 제379호
- 전용식·정인영(2018. 1. 2),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35호
- ANZ(2018. 3), “ANZ Smart Choice Super and Pension”
- 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nuation Trustees(2017. 7. 9),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for CIPR*, AIST Submission to Treasury
- Australian Government(2016. 12. 15),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ncome Products for Retirement”, *Discussion Paper*
- _____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 _____ (2011. 3), “Stronger Super-Issues Paper on Defining MySuper”

r”, MySuper Consultation Working Group

_____(2010),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_____(2015. 7),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2. 10), *Instruction Guide: Application Form-Authority to Offer a MySuper Product*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5), Reporting Standard SRS 700.0 – Product Dashboard, <https://www.apra.gov.au/sites/default/files/draft-reporting-standard-srs-700.0-product-dashboard-december-2015.pdf>

Clare, Ross (2017. 9), “The Experience of Individuals with Insurance Through Superannuation”, ASFA Research and Resource Centre, https://www.superannuation.asn.au/ArticleDocuments/359/1709_Insurance_through_superannuation.pdf.aspx?Embed=Y

Clare, Ross and Craston Andrew(2017. 3),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Industry”, ASFA Research and Resource Centre, www.superannuation.asn.au

Financial System Inquiry(2014. 11), *Final Report*

KPMG(2017. 9),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Long, S.(2010), “Retirement Savings Going Backwards”, ABC News

Mercer(2018),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2017*

OECD(2017), *Pension at a Glance 2017-OECD and G20 Indicators*

Rice Warner(2016), *Superannuation Fees*, Financial System Inquiry

_____(2014), *MySuper Fees*, *Financial System Inquiry*, <http://fsi.gov.au/files/2014/12/MySuper-fees.pdf>

Superannuation Industry Regulation 1994(1994),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reg/sir1994582/

Sy,W.(2011), “Redesigning Choice and Competition in Australian Superannuation”, *Rotman International Journal of Pension Management*, 4(1), pp. 52~61

Vanguard(2017. 6),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https://static.vgcontent.info/crp/intl/auw/docs/literature/research/Australian_Superannuation_System_Overview_2017.pdf?20180301%7C083814

_____(2017. 6), *How Australia Saves 2017: A Report on Superannuation Data*, https://static.vgcontent.info/crp/intl/auw/docs/literature/research/How_Australia_Saves_2017.pdf?20171208%7C154127

Willis Towers Watson(2018), *Global Pension Assets Study 2018*

World Bank Group(2016), *New Lessons From Australia to Improve Pension Outcomes*

https://secure.superfacts.com/web/IWfiles/attachments/Form/SA008_MySuperProductDashboard.pdf

<https://www.australianethical.com.au/super/product-dashboards/>

<http://www.canstar.com.au>

부록 I. 퇴직저축계좌(RSAs: Retirement Savings Accounts)

호주에서는 1997년 Retirement Savings Account Act 1997에 입각하여 기금형 퇴직 연금제도 외에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s: RSAs)를 도입하였다. 이는 예금취급기관(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e: ADI)인 은행, 주택대부조합 및 상호신용조합(Credit Unions)과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계좌(Superannuation Account)를 의미한다.

기존 연기금과 달리 신탁제도 밖에서 제공되는데, 비용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원리금보장형(Capital Guaranteed)만 가능하다.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투자에는 적절하지 않다. RSAs가 대상으로 하는 계층은 임시직, 파트타임 종사자, 저축 초기 단계 또는 은퇴에 임박한 그룹 등 리스크 회피성향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원리금보장형 계좌이므로 낮은 리스크, 낮은 비용의 투자옵션을 제공하며, 유지관리비(Ongoing Administration Fees)를 면제함으로써 수수료 부과로 인해 적립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신탁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RSAs는 은행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므로 세제혜택, 사용자 부담금, 인출 제한 등에 대해서는 기금형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3층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세전 및 세후 부담금 한도액(2017. 7. 1 기준)이 각각 \$25,000, \$100,000로 기금형보다 낮다. 정부의 매칭 기여는 연간 \$500 한도이다.

따라서 국세청과 감독당국에서는 RSAs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입자별 정보(부담금 납입)를 통일된 방식으로 요구한다. 다만, RSAs의 지배구조 및 투자 관행이 기금형과 다르기 때문에 기금형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은 RSAs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II. MySuper 가입자의 투자행동

MySuper 도입은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라이프 사이클 투자옵션을 활용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상당수의 퇴직연금기금이 수수료 축소를 위해 라이프 사이클 투자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 방식에서는 가입자 연령 증대에 따라 운용 비용이 낮은 안정형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데, 가입자 연령이 높아지면 사용자 부담금 및 투자수익이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하락하게 된다.

여기서는 MySuper 상품 가입자의 투자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Sunsuper 가입자 64만명의 행동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Vanguard 2017). Sunsuper는 1987년에 설립된 연합 방식의 산업형기금(Multi-Industry Superannuation)으로 제공하는 투자옵션은 현금, 채권, 실물, 라이프 사이클 펀드, 혼합형(Diversified Balanced) 펀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신흥국 주식 등이다. 2014년부터 MySuper 상품으로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지정하였다. 혼합형 펀드 역시 수탁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포트폴리오이지만, 가입자가 투자위험을 선택하므로 연령별 위험자산 비중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다. 연기금 정책에 따라 투자상품을 직접 관리(Self-Directed)하는 가입자의 경우 21개의 투자옵션 중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부록 표 1〉은 가입자가 선택한 투자옵션 유형별 비중이다. 2016. 6. 30 기준 가입자의 83%가 디폴트 상품인 라이프 사이클 펀드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접 관리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라이프 사이클 투자자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젊고, 가입기간이 짧으며, 소득수준도 낮는데 비해 혼합형 투자자는 연령이 높다. 직접 관리하는 투자자 집단은 남성의 비중이 높으며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수준도 높은 특성을 보인다.

〈부록 표 1〉 투자유형별 가입자 특성(Sunsuper 2016. 6. 30)

구분	라이프 사이클 펀드 (MySuper)	혼합형 펀드	직접 관리
가입자 비중(%)	83	5	12
남성 비중(%)	54	54	59
연령(세, 중앙값)	33	42	40
가입기간(년, 중앙값)	5	9	11
임금(\$, 중앙값)	34,945	54,015	57,386

자료: Vanguard(2017), *How Australia Saves 2017: A Report on Superannuation Data*

가입자의 투자유형별 자산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의 60~70% 정도가 성장자산에 투자되어 있다. 라이프 사이클 및 혼합형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가입자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성장자산의 비중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펀드의 2%는 은퇴 후 소득창출을 위한 인출계좌(Pension)이다.

〈부록 표 2〉 투자유형별 자산배분(Sunsuper 2016. 6. 30)

(단위: %)

구분	채권/현금	실물	혼합형	라이프 사이클	주식	인출 계좌	성장자산 비중
라이프 사이클 펀드	-	-	-	100	-	-	70
혼합형 펀드	-	-	98	-	-	2	65
직접 관리	14	2	64	2	17	1	63

주: SunSuper 가입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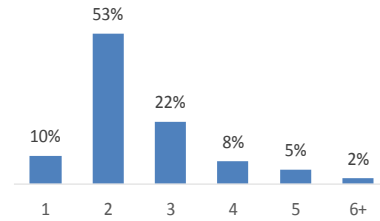
자료: Vanguard(2017), *How Australia Saves 2017: A Report on Superannuation Data*

가입자의 실제 선택행동을 보면, 전체 가입자의 88%가 제공된 투자옵션 중 1개(라이프 사이클 펀드: 83%, 혼합형 펀드: 5%)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관리하는 가입자도 평균 2.5개의 옵션만 활용하며, 3개 이상 옵션을 사용하는 비중은 1/3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이상 투자옵션을 선택한 가입자는 단 2%에 불과하다.

〈부록 표 3〉 활용한 투자옵션 개수

구분	라이프 사이클 펀드	혼합형 펀드	자기 관리
중앙값	1.0	1.0	1.0
평균	1.0	1.0	2.5

〈부록 그림 1〉 활용한 투자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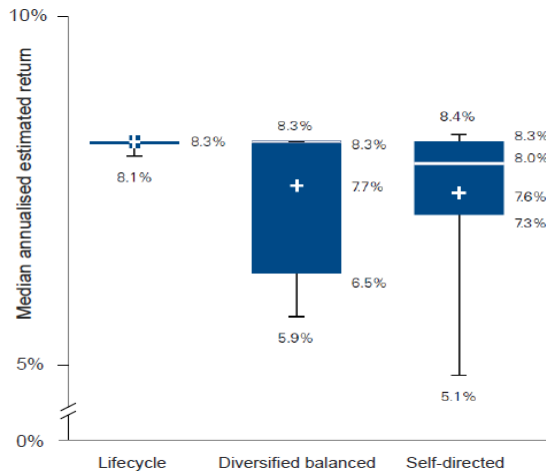


주: 그래프 가로 축은 투자옵션 개수, 세로 축은 전체 가입자 대비 비중임

자료: Vanguard(2017), *How Australia Saves 2017: A Report on Superannuation Data*

가입자의 5년 누적수익률(연 기하평균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부록 그림 2〉와 같이 유형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MySuper 상품으로 인가받은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선택한 가입자는 수익률 분포가 집중된 반면, 혼합형 펀드 선택자와 직접 관리한 가입자의 분포는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2〉 투자유형별 5년 수익률 분포(Sunsu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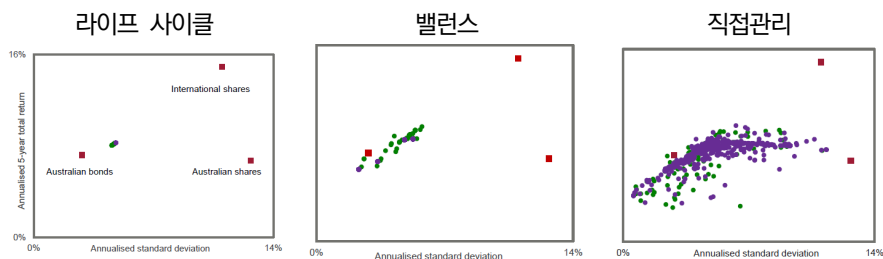
자료: ASFA(2017. 3),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Industry"

라이프 사이클 투자자의 경우 하위 5%와 상위 5% 수익률이 각각 8.1%, 8.3%로 0.2%p 차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밸런스 투자자의 경우 하위 5%(5.9%)와 상위 5%(8.3%) 수익률 격차는 2.4%p이며, 직접관리하는 경우 그 격차는 3.3%p(5.1% vs. 8.4%)로 커진다.

한편, 투자유형별 5년(2012~2016)간 위험과 수익 분포를 살펴보면,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부록 그림 3>은 각 투자유형에 속한 가입자 중 1천 명을 임의표본 추출한 것이다(2016. 6. 30 기준). 투자전문가가 관리해주는 라이프 사이클의 경우 동질적인 자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투자결과도 거의 유사하다. 거의 모든 가입자의 위험-수익이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 사이에 집중되어 분포하며, 우상향 기울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라이프 사이클에 비해 혼합형 펀드 투자는 서로 다른 다각화된 옵션이 각기 상이한 자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더 넓은 분포를 보인다.

직접 관리한 투자자의 경우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데 개인별 선택 및 리밸런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결과이다. 경우에 따라 일부는 월등히 높은 수익률과 낮은 위험을 보이지만, 대다수는 평균 수익률을 하회하거나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부록 그림 3> 투자유형별 위험-수익 분포(Sunsuper 2012~2016년 평균)



자료: Vanguard(2017), *How Australia Saves 2017: A Report on Superannuation Data*

가입자의 자산배분 변경 행동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소극적이다. 2016년 기준 자산배분을 변경한 가입자 비중은 1%, 적립금의 3.7% 수준이다. 라이프 사이클 펀드 투자자의 자산배분 변경 비중은 0.5% 미만으로 극히 낮으며, 혼합형 펀드 투자자(7%)에 비해 훨씬 낮다. 연령이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산

배분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직접 관리형 투자자의 실제 변경 비율은 6% 수준에 불과하다.

〈부록 표 4〉 자산배분 변경(Sunsuper)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변경 가입자 비중(%)		1	1	1	1	1
변경 적립금 비중(%)		6.6	5.4	5.2	4.7	3.7
변경한 금액(\$)		1,250	1,263	1,487	1,546	1,327
투자 유형	라이프 사이클 펀드	-	-	< 0.5	< 0.5	< 0.5
	혼합형 펀드	< 0.5	< 0.5	8	7	7
	직접 관리	10	9	6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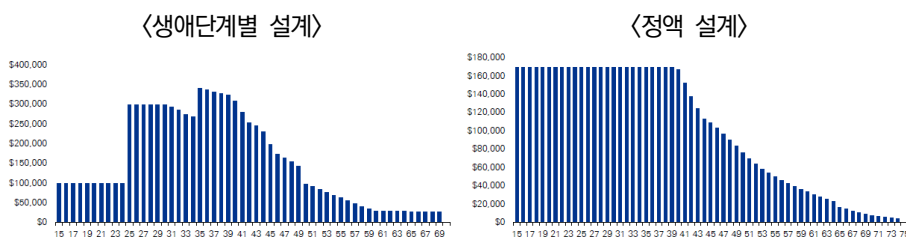
자료: Vanguard(2017), *How Australia Saves 2017: A Report on Superannuation Data*

부록 III. 디폴트 보험 특성

연기금 수탁자가 MySuper 상품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을 적용 제외(Opt-Out)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보험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많지 않다. 여기서는 12개 연기금의 디폴트 보험에 대해 조사한 KPMG(2017) 자료를 중심으로 가입금액과 보험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디폴트 보험은 단체보험 방식으로 체결되므로 연기금 수탁자가 가입자의 보장금액과 니즈에 부합하도록 보장 방식을 설계한다.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의 가입금액은 연령을 고려하여 설계하는데, 생애단계별 차등화할 경우, 젊은 계층의 보장금액은 낮고, 35~40세 경제활동이 활발한 계층의 보장금액은 높게 설정한다(〈부록 그림 4〉 왼쪽 그래프). 정액 설계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다가 그 시기가 경과하면 보장금액을 축소하게 된다(〈부록 그림 4〉 오른쪽 그래프).

〈부록 그림 4〉 단체사망보험 가입금액 설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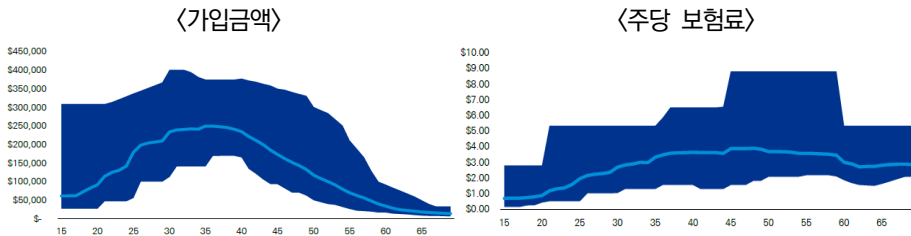


주: 가로 축은 연령, 세로 축은 가입(보장)금액임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는 연기금별로 상이하다. 사망보험에 대한 전체 연기금 평균 가입금액은 20세 \$92,218이고, 60세는 \$18,500 수준이다. 연기금별로 보면, 30세 가

입자의 경우 \$113,000~\$401,000 구간 내에 분포한다. 사망보험의 1인당 보험료는 가입금액, 연령, 직종, 성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1주당 \$1.04~\$4.28 수준이다.

〈부록 그림 5〉 연기금별 단체사망보험 가입금액과 주당 보험료 분포



주: 1) 가로 축은 연령, 세로 축은 가입(보장)금액(왼쪽)과 보험료(오른쪽)임

2) 영역 그래프는 범위이며, 선 그래프는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영구장해보험의 경우 30세 평균 가입금액은 \$50,000~\$401,000 내에 분포한다. 평균 가입금액은 34세 시점이 가장 높고(\$169,236), 이후 감소한다.

〈부록 그림 6〉 연기금별 영구장해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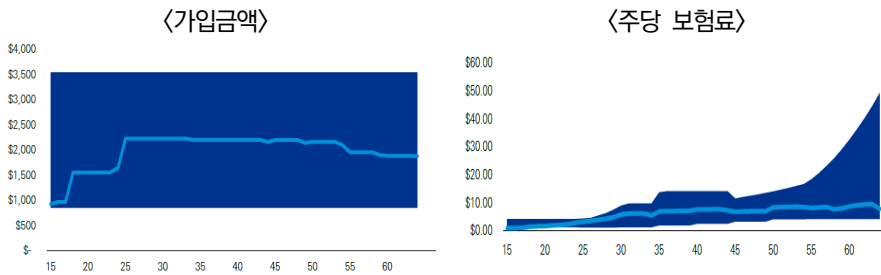
주: 1) 가로 축은 연령, 세로 축은 가입(보장)금액(왼쪽)과 보험료(오른쪽)임

2) 영역 그래프는 범위이며, 선 그래프는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연기금별 가입금액과 주당 보험료 분포는 〈부록 그림 7〉과 같다. 67%가 정액 방식(예: 월 \$2,500, 200만 원)이며, 나머지 33%가 임금과 연계된 방식으로 설계한다. 디폴트 보장금액의 분포는 월간 \$850부터 임금의 90.4% 수준이며, 보장기간은 2년부터 67세까지 조합하여 설계한다.

〈부록 그림 7〉 연기금별 소득보상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 분포



주: 1) 가로 축은 연령, 세로 축은 가입(보장)금액(왼쪽)과 보험료(오른쪽)임

2) 영역 그래프는 범위이며, 선 그래프는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KPMG(2017), *Review of Default Group Insurance in Superannuation*

부록 IV. 퇴직연금상품 비교 공시

호주에서는 퇴직연금 전문기관이 입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상품의 투자 성과, 수수료 및 부가 서비스 등을 상호 비교한다. 이는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핵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부록 그림 8〉은 퇴직연금상품 전문평가기관(<https://www.canstar.com.au/superannuation/>)에서 적립단계(Super Funds)와 인출단계(Account Based Pension) 상품을 각각 비교 검색한 사례이다. 소비자가 구체적인 검색 조건을 선택하면, 옵션, 서비스, 투자성과, 평가등급, 연간 비용, 제공되는 펀드 개수, 보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평가등급은 별 개수(최대 5개~최저 1개, 무등급)로 표시되는데, 별표의 개수는 전문가 그룹이 가격과 서비스의 특성을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연간 비용은 특정 적립금 규모(적립단계: \$30,000, 인출단계: \$100,000 등)에 대해 부담하는 운용수수료 및 간접비용(보험료 미포함)을 절대금액으로 표시한다.

〈부록 그림 8〉 적립 및 인출단계의 퇴직연금상품 비교

〈적립단계 상품: Super Funds〉

Overview	Options	Services	Performance		
Company ⓘ	Investment Option ⚙	Past 1 Year Return ⚙	Past 3 Year Return ⚙	Past 7 Year Return ⚙	
AustralianSuper					
	AustralianSuper - Balanced	+9.67%	+7.53%	+8.98%	
Bendigo SmartStart Super Growth Index Fund					
	Bendigo SmartStart Super Personal - Bendigo Growth Index Fund	Not Available Contact Bendigo Bank	—	—	
CareSuper Employee Plan					
	CareSuper - Balanced	+8.50%	+7.12%	+8.72%	
First State Super - Personal - Growth					
	First State Super Personal - Growth	+8.98%	+6.13%	+8.17%	

Overview	Options	Services	Performance	
Company ⓘ	Star Rating ▼	Annual cost at \$30k balance ⚙	Number of managed funds ⚙	Life & Income Protection ⚙
AustralianSuper				
	★★★★★	\$303.00	11	✓
Bendigo SmartStart Super Growth Index Fund				
	★★★★★	\$236.00	12	✓
CareSuper Employee Plan				
	★★★★★	\$435.00	12	✓

〈인출단계 상품: Account Based Pension〉

Overview	Investment Options			
Company ⓘ	Star Rating ▼	Min investment amount ⚙	Total annual cost at \$100,000 ⚙	No of managed funds ⚙
ANZ Smart Choice Pension				
	★★★★★	No min	\$580	13
AMIST Pension				
	★★★★★	\$20,000	\$1,118	5
BUSQ Pension Choice				
	★★★★★	\$25,000	\$720	11

자료: <http://www.canstar.com.ac>에서 발췌하여 저자 작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9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6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_____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저 자 약 력

이 경 희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계리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E-mail : khlee@smu.ac.kr)

연구보고서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91-6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